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2010. 12.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년 12월 일 인쇄

2010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00-842)

전화 / (02) 2125-9700 팩스/(02)2125-9878

<http://www.humanrights.go.kr>

번역 및 편집자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전문감수 :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인쇄 : 리드릭(02)2269-1919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86-01

목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요 1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5

〈부 록〉

1. 제10차 인권이사회 결의 10/3(Resolution 10/3) 59
2. 제12차 인권이사회 결의안 12/4(A/HRC/RES/12/4) 61
3. 제15차 인권이사회 결의안 15/11(A/HRC/RES/15/11) 63
4.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의견
(A/HRC/12/36) 66
5. 제15차 인권이사회에서 보고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초안(A/HRC/15/28) 101
6.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년도 계획수립에 따른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국문) 150
7. Responding to UN the Second Phase Plan of the World Human
Rights Educatio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영문) 156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요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 Education)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의 개요

2004. 12. 10. 유엔 총회 결의(59/113)에 근거하여 모든 사회분야에서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을 발전시키고자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2005 - 계속)을 수립하였다. 본 세계프로그램의 조정 및 운영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담당하고 있다.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거틀을 제공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일반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의 확대된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권교육의 기본적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보편적 이해 증진을 꾀하고 있다.

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세부 분야 및 쟁점에 대한 국가적 인권교육에 대한 노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연속적인 단계로 구조화된 운영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에서는 초중등학교과정 내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5)의 초점은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2014)**

내 용

요약문	9
I. 개요	10
A. 인권교육의 배경 및 정의	10
B.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	13
C. 인권교육활동의 원칙	14
II.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	16
A. 범위	16
B. 세부목표	17
C. 고등교육 내의 인권교육 증진 행동	18
1. 수립배경	19
2. 추진전략	21
3. 행위주체	34
D.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증진행동	36
1. 수립배경	37
2. 추진전략	38
3. 행위주체	47
E. 국가이행절차	48
1. 이행단계	48
2. 조정 및 협조사항	53
F. 국제협력과 지원	54
G. 조정 및 평가	56

요 약 문

2010년도 1/4분기 인권위원회 결의문12/4에 의거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유네스코(UNESCO)의 자문을 받아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10-2014) 행동계획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이 과정에는 관련 유엔 조약 및 문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는데 이들 중 특히,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행동계획은 주요한 기초자료로 참고하였다.

지난 4월 해당 초안은 유네스코, 국가인권기구, 학술연구기관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및 참가자 등을 포함하여 비정부활동가 등을 비롯하여 관련 정부간 기구 등에 검토를 의뢰하고자 제출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2개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회신받았고 해당 의견들은 본 초안의 수정보완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고려되었다.

2010년 5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모든 정부에 외교 구상서를 전달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 등 28개국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중심으로 해당 초안을 검토하여 최종 마무리 지었다.

I. 개요

A. 인권교육의 배경 및 정의

1. 국제사회는 점증적으로 인권교육이 인권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모든 공동체,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서 인권을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공동적 책임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이고 평등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 체제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진작함에 있어 공헌하고 있다.
2.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은 ; 1948년 세계인권선언(26조)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다수의 국제조약 및 문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 ; 1965년 국제인종차별철폐조약(7조),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3조), 1980년 고문방지협약(10조),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10조), 1989년 아동권리협약(29조),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조약(33조), 2006년 장애인 권리조약(4항 및 8항),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제1부 33~34항 및 제2부 78~82항), 2001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의 선언문 및 행동계획(선언문, 95~97항 및 행동계획, 129~139항), 2009년 더반

검토회의결과보고서(the Outcome Document of the Durban Review Conference : 22항 및 107항), 2005년 세계정상회담 성과보고서(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 131항) 등이 그 구체적인 문서들이다.

3. 국제사회에서 동의된 바 있는 인권교육의 정의와 관련된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위의 조약들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
- (b)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
- (c) 모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 간의 이해, 관용, 남녀평등 및 우애 증진;
- (d)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합법화할 것 ;
- (e) 평화의 구축 및 유지 ;
- (f)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정의의 증진.

4.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

- (a) **지식과 기술** : 인권과 실행방법에 관한 메커니즘에 관한 학습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것 ;

- (b) **가치, 태도 및 행동** : 인권을 옹호하는 가치를 개발하고 이에 걸맞는 태도와 행동을 강화할 것 ;
- (c) **행위**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취할 것.

5. 인권교육 관련 사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유엔의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국제적 행동 준거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인권관련 정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인권에 관한 공공정보 세계 캠페인(The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on Human Rights : 1988-현재),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 전략의 정교화와 이행을 진작하고 있는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과 그에 따른 행동계획(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and its plan of action), 전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세계 10년(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 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 2001-20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교육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2005-2014), 세계인권학습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Human Rights Learning : 2008-2009), 세계문화친선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 2010) 등.
6. 국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이사회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비공식적 지역 간 모임인 인권교육

훈련을 위한 플랫폼(The Platform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는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발전을 진전시키고 있다.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준비한 1차 초안이 2010년 3월에 이사회에서 발의되었다. 2010년 3월 25일 인권이사회 결의안 13/15에서 인권이사회는 발의된 선언문 초안을 기반으로 협의하고 마무리 지어 2011년 3월 까지 본 이사회에 선언문 초안을 제출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Open-ended) 정부 간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7. 2004년 12월 10일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는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선포하였다. 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교육 이행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특정 분야 및 쟁점에 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적 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B.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

8.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a) 인권문화 발전의 촉진 및 홍보 ;
- (b) 국제조약에 근거한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공동의 이해 증진 ;
- (c)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의

보장 ;

- (d) 모든 관계자를 위한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지침의 제시 ;
- (e) 모든 단계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
- (f)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지원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및 해당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및 신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C. 인권교육활동의 원칙

9. 본 제2차 세계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교육활동을 실행할 것이다 :

- (a)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불가분성과 보편성을 증진한다 ;
- (b) 차이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을 함양하고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국적, 민족 혹은 사회적 출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성적 지향 및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반대한다 ;
- (c)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응방안과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생태학적 분야 등에서 급격한 개발의 관점에서(빈곤, 폭력적 분쟁과 차별 등을 포함하여) 만성적이고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석을 촉구한다 ;

- (d) 자신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
- (e) 자신의 관할권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책임있는 의무이행자(특히, 정부 공무원 등)가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
- (f) 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갖든 인권적 원칙 위에서 구축돼야 하고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
- (g) 인권보호를 위하여 현지의 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인권조약과 메커니즘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
- (h) 인권을 발전시키는 행동을 위해 지식, 비판적 분석 및 기술 등을 포함하는 참여적 교육 방법론(participatory pedagogy)을 활용하도록 한다 ;
- (i) 참여, 인권의 향유, 온전한 인격의 발달을 고취시키고 결핍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 (j) 인권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인 규범의 표현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여건의 현실로 변형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인권을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연관시켜야 한다.

II.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

A. 범위

10.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에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체계 내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된 행동계획은 2005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1. 인권이사회 결의안 12/4에 따르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는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와 교육자, 공무원, 법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초등과 중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12. 본 행동계획은 구체적으로 두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이고, 둘째는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이다.

13.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으로는 초등과 중고등교육에 관한 전략은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교사로 정의되기도 하는 고등교육 교원(Teaching Personnel)에 관해서는 본 행동계획의 고등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4. “교육자”란 공식적, 비공식적, 비정규적 환경에서 인권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하는 이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광의적 정의이다. 본 행동계획에는 이와 같은 광의적 정의의 교육자를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지만 고등교육 교원과 관련된 인권교육의 원칙과 전략은 유추나 유사한 사항을 참고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B. 세부목표

15.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전체적 목표(위의 I. B절 참조)를 고려하여 본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 (a) 인권실천을 진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고등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할 것 ;
 - (b) 관련된 지속가능한 국가적 전략의 개발, 채택, 이행을 지원할 것 ;

- (c) 고등교육내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지침으로 제공할 것 ;
- (d)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지자체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한 고등교육기관과 회원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권장할 것 ;
- (e) 지방, 국가, 지역, 국제 등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 간의 네트워크 및 협력구축을 지원할 것.

C. 고등교육 내의 인권교육 증진 행동

- 16. “고등교육”이란 권한이 있는 국가당국으로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중등과정 이후에서의 모든 연구, 훈련, 조사연구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고등교육 영역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일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및 의료와 법률 종사자의 훈련과 자격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 17. C절의 경우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행동계획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초·중·고등학교 등 전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정규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원칙과 전략이고 이들 모든 부문이 교육권(Rights to Education)이라는 범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1. 수립배경

18.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본 행동계획은 많은 국제인권법 또는 인권교육관련 법률, 문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준거틀에서 차용된 사항이다.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위원회(일반권고 1. 교육의 목표)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및 사회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관련 지침(일반권고 13. 교육권) ; 비엔나선언 및 행동프로그램 ; 국제적 이해, 협력과 평화교육,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권고(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을 위한 행동기준과 유네스코 선언(UNESCO 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유네스코 고등교육 연구 및 자격인증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related regional conventions) ; 유네스코 고등교육교수인력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고등교육선언 : 비전과 행동(UNESCO World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Vision and Action) ;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고등교육 컨퍼런스 최종 보고서“사회변화와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과 조사연구의 새로운 역동성(Final document of the 2009 UNESCO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the new dynamic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등의 전술된 문서들의 예시이다.

19. 2000년 8월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 : EFA) : Meeting Our Collective Commitments, EFA),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국제적 의견과 집단적 책임은 세계인권선언이 지지하는 교육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에 관한 학습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Dakar Framework에 따르면“교육은 사회적 응집력을 배양하고 사회변화에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및 안정성 유지(제6절)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하고 있다. Dakar Framework 목표 6은 교육의 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교육의 모든 측면을 질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읽기능력, 산술능력, 기초적 생활기술 등의 인지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이들이 의미하는 질적 교육에 대한 개념의 기반은 읽기, 쓰기, 산술능력을 넘어 교육의 또다른 중요한

결과물로서 민주적 시민권과 연대를 증진하는 태도 등의 역량을 꼽고 있다.

2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어서는 교육이 농촌개발, 보건, 지역참여, HIV/AIDS, 환경,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인권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과 태도를 가진 학습자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 계획에서는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은“정의와 공정성 등과 같은 여타의 가치와 우리 모두가 한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공유의 인식 등을 지지하는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세계프로그램(the World Programme)은 공통적인 관심사와 쟁점을 제시하고 연속선상에서 추진해야 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10년(the UN Decade of Edu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과 함께 상승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2. 추진전략

21. 학문적 자유의 향유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은 책임성과 모든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 기능(조사연구, 교육, 지역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평화 구축, 인권 수호 및 민주적 가치 등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도덕적 시민을 교육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빈곤퇴치 및 차별철폐, 분쟁 후 재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다문화의 이해 등과 같은 현재 인권쟁점이 직면할 수 있는 지구적 지식(Global knowledge)을 생성해야 할 책임 또한 갖는다.

22. 따라서,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역할은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항이다. 교육이 “교과과정의 내용 뿐 아니라 교육적 과정, 교육학적(pedagogical) 방법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내의 인권교육을 아래의 사항을 함하고 있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

- (a) “교육을 통한 인권”이란 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 등을 포함한 모든 학습 요소와 과정 등은 인권에 대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장할 것 ;
- (b) “교육에서의 인권”이란 고등교육체계 안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 존중과 권리실천을 보장할 것.

23.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은 많겠으나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분야에서의 실천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

(a) 정책 및 이행조치

24. 교육정책내의 인권교육 정책의 개발, 채택 및 이행 뿐 아니라 교육정책 속에 인권을 융합시킨다는 것은 제도적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 및 각 국가의 교육체계에 따라 권리와 책임의 공유 등과 일관성이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5. 정책개발은 교원연합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참여적이어야 한다.
26. 고등교육체계에 인권교육 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a) 고등교육체계내의 인권 및 특정 인권교육 포함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을 개발할 것 :
 - (i) 교육법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인권교육에 관한 개별 법률을 채택할 것 ;
 - (ii) 모든 법률이 인권교육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입법에서 인권원칙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
 - (iii) 인권교육정책은 인권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기반할 것을 보장할 것 ;
 - (iv)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대학문화와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운영 및 관

- 리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개발할 것 ;
 - (v) 평등, 차별금지, 존중, 존엄성, 품위, 공정성, 투명성 등의 인권원칙을 존중하는 교원의 채용, 심사, 보상, 징계 및 승진 등을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침을 수립할 것 ;
 - (vi)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정책을 수립할 것. 채용, 고용, 훈련 및 승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견 철폐 정책을 검토할 것 ;
 - (vii)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등교육보장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능력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취약집단에게 접근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할 것 ;
 - (viii) 관련 전문 직종에 대한 국가 자격 혹은 인증 기준을 마련할 때 인권훈련을 기준에 포함시킬 것.
- (b) 관련 정책 간의 응집성, 연관성 및 상승효과(시너지)를 보장할 것 :
- (i) 국가고등교육계획 : 전국민교육(Education For All)을 위한 국가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10년(2005-2014)의 국가정책 수립 및 통합적 교육정책 등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 ;
 - (ii) 국가인권계획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국가빈곤퇴치 전략: 및 기타 개발 계획 등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

- (c) 교원을 위한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인권교육 훈련정책을 채택할 것 ;
- (i) 강사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훈련(Training for trainers), 교원에 대한 사전교육(Pre-service), 현직훈련(in-service) 등 ;
 - (ii) 사전교육, 현직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교원훈련정책 및 프로그램에 학생과 교사의 권리, 책임, 참여 등에 관한 정보 ;
 - (iii)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활동을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 ;
 - (iv) 인권교육을 교육직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자격부여 및 경력개발 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s)의 인권훈련 활동의 자격부여 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검토할 것 ;
 - (v) 인권훈련 프로그램 및 이행 평가 기준 및 표준 개발.
- (d)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의무 이행 ;
- (i) 교육권과 인권교육 관련 국제조약 비준 촉구할 것 ;
 - (ii) 유엔 각종 조약기구(아동권리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모니터링기구, 유엔 특별절차(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등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에 인권교육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것 ;
 - (iii) 위에서 언급한 국가보고서 준비시 비정부기구 기타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 ;

- (iv) 국제모니터링기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공지하고 이행할 것 ;
- (v) 관련 정책의 이행조치를 개발하고 채택할 것. 효율적인 교육정책 개발 및 개혁은 명확한 정책공약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이행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전략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방법, 메커니즘, 책임 또는 자원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이러한 이행전략은 인권 교육 정책의 일관성, 모니터링,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교육·학습과정 및 교구

- 27. 고등교육체계내의 인권교육의 도입 혹은 개선은 교육과 학습방법에 있어서 **전체론적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의 채택**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 자원, 방법, 평가 등의 교육 전반적인 과정의 통합과 교실이나 고등교육기관을 벗어나 사회에 대한 고찰 및 학술공동체의 서로 다른 구성원과 그 외의 구성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 28. 양질의 인권교육과 학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인데 이는 교원 뿐 아니라 국가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정책 입안자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

(a)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 (i) 인권을 모든 고등교육분야에 통용되는 주제로 포함시킨 전략의 개발 - 법학이나 사회과학 혹은 역사학 뿐 아니라 기술 및 과학분야(예를 들어 개발, 환경, 주거 등이 건축학 및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육아, 공중보건, 여성의 출산의 권리, HIV/AIDS, 장애 등의 문제는 의학과 연관되어 있고 식품, 주거, 환경 등은 생명공학과 건축학 등과 관련이 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등 ;
- (ii) 모든 학과의 학생들을 위한 인권에 관한 개론과정 개설을 고려할 것;
- (iii) 각 전공 및 학과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심화과정의 개설을 검토할 것 ;
- (iv) 다양한 분야와 주제영역의 인권으로 특화된 석/박사과정 개설할 것;
- (v)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학제간(interdisciplinary) 인권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b) 교육 및 학습 자료에 관련된 사항 :

- (i) 교수 및 학습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균형잡히고 연관성있는 인권교육 훈련교재의 자원 및 이러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으로 교과서 및 교재내의 인권관점이나 원칙을 확인하고 검토하며 수정보완할 것 ;

- (ii) 인권교육교재는 적절한 문화적 배경 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인권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사항이어야 함을 확인할 것 ;
- (iii) 인권교육교재의 수집, 공유, 번역 및 적용을 장려할 것 ;
- (iv) 당사국 또는 지역에서 유엔이 발간한 인권/인권교육 교재를 학습교재와 조사연구 보고서로 활용할 것.

(c) 교수학습 수행 및 방법론에 관련된 사항 :

- (i) 문화적 사항을 수용하면서 학습자 개인 인권과 존엄성 및 자긍심을 존중하는 등의 인권에 부합하는 교수방식을 채택할 것 ;
- (ii)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적 참여를 진작시키며 대안적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 및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 ;
- (iii) 학습자가 자신의 실생활과 경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학습참여자가 인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 학습방법을 도입할 것 ;
- (iv)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습득해야 할 인권기술과 능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지적(지식과 기술), 사회적/정서적(가치, 태도, 행동) 등 학습의 전체 영역상의 결과에 있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할 것 ;
- (v)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을 위한 품질보장 시스템을 확립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세부적 품질 보장 체계를 만들 것.

- (d) 교육 및 학습지원과 자원 등에 관련된 사항 ;
 - (i) 고등교육기관 내에 지속가능한 인권훈련 프로그램과 과정을 개설하거나 개선하여 질을 보장하고 인권학과 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인권훈련 및 자료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킨다 ;
 - (ii) 인권관련정보나 논의 등의 교류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신정보기술에의 접근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웹사이트 자원의 개발, e-learning 활성화 및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e-forum, 원격회의 및 원격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
 - (iii) 인권교육훈련의 증진수단으로 장학제도를 장려한다.

(c) 조사연구

29. 인권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고 비판적 성찰을 진전시키는 고등교육의 역할을 기본적인 것이다. 고등교육은 조사연구를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인권교육 정책 및 실천을 알려야 한다 :

- (a) 기존 사례의 분석과 평가, 교훈 배우기와 평가활동 등이 중심인 인권교육을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인권교육방법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투자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도출되는 연구결과를 널리 보급할 것 ;
- (b) 인권원칙과 개별적인 인권조약이 일반적인(보편적인) 연구

- 과제로서 구체적인 주제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권장하고 투자할 것(정부정책 및 프로그램, 기업관행, 지역 공동체의 시도, 사회적 문화적 규범 등) ;
- (c) 고등교육과정 및 기타 과정에서 인권교육 우수실천사례의 평가, 수집, 보급할 것 ;
 - (d) 상이한 고등교육기관,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의 연구자 및 교수요원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연계,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개발, 인권교육 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
 - (e) 어떻게 인권교육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인권연구 및 조사 기능을 촉진, 제공함으로써 역량강화 기반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자료센터 및 도서관 등의 설립과 발전을 진작할 것 ;
 - (f) 인권관련 조사연구 증진의 수단으로 장학제도 및 펠로우십을 권장할 것 ;
 - (g) 국제적 실태조사 및 비교연구에의 참여.

(d) 학습 환경

- 30. 고등교육환경에서는 학술공동체의 모든 이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조사, 교수, 연구, 토론, 기록, 제작, 창작, 저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식과 견해, 신념 등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발전시키며 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체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국가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가해질 차별이나 억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전문적 혹은 대변할 수 있는 학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동일한 사법권 안에서 타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한다.

31. 고등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의 도입은 고등교육기관 당국이 교육기관에 인권이 존재하고 인권이 실천되는 장소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목표, 실천, 조직 등이 인권원칙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을 수 있다:
 - (a)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현장과 같은 명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권방침문 : 갈등을 해소하고 폭력을 다루는 절차가 포함된 폭력, 성희롱, 성폭력,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행동수칙 : 입학, 장학제도, 승급, 승진, 특별 프로그램, 자격심사, 기회부여 등에 관한 차별금지 학칙 등을 개발할 것 ;
 - (b) 교원들에게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인권교육의 의무강화 및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권교육 개발 및 실천 기회를 보장할 것 ;

- (c)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사서, 기록관, 조교, 행정직 직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것 ;
 - (d)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학생의 의사표현과 참여, 학생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타협하며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
 - (e)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자체와의 협력적 노력으로 축제, 회의, 전시회 등의 특별행사 조직 등을 통하여 인권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고등교육기관이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하도록 강화할 것 ;
 - (f)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클리닉의 설치 혹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실습과정 혹은 기타 시민사회활동가로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인권문제에 관한 지역사회 내의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서비스 실천을 장려할 것 ;
 - (e)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교육 및 전문성 개발.
32. 교육자는 자신의 전문적 책임수행에서나 역할모델기능 양자 모두에서 인권의 가치, 기술, 태도, 동기부여, 실천 등을 전달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의 전문가적 지위에 대한 인정과 존중 뿐 아니라 적절한 인권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3. 고등교육교원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개발에 인권교육을 제 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

- (a) 인권교육에 관한 재직 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교육과정 개발에 포함돼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다 :
 - (i)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인권보호 메커니즘의 지식과 이해 ;
 - (ii)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인 권학적 관점 ;
 - (iii) 공식적, 비공식적, 비정규적 교육 간의 연계를 포함한 인권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육학적 이론 ;
 - (iv)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론 및 교육자의 역할 ;
 - (v) 민주적이고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자의 사회기술 (Social skills)과 리더십 스타일 ;
 - (vi) 해당 기관에서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 ;
 - (vii) 기존의 인권교육 자료에 관한 정보 및 많은 정보 중 자료 검토 및 선별할 수 있는 고등교육교원의 역량구 축 뿐 아니라 신규자료 개발 능력 ;
- (b) 적절한 훈련방법의 개발과 활용 :
 - (i) 성인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 특히, 학습자 중 심적이고 가치와 행동에 관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고 동기부여, 자긍심 및 감수성 개발 등을 고려한 성인용 인권교육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

- (ii) 적절한 인권교육 훈련방법이란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협력적이어야 하고 경험과 실천 중심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이론을 실천과 접목시켜 습득된 기술을 교실 등과 같은 현장에서 시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c) 적절한 교육 자원 및 교재의 개발과 보급 :
 - (i) 우수 인권교육훈련 실천사례의 수집, 보급 및 교류 ;
 - (ii) 비정부기구(NGOs) 및 기타 시민사회부문이 개발한 인권교육훈련 방법의 현황 파악 및 보급 ;
 - (iii) 재직 중 교육활동으로서의 인권교재의 개발 ;
 - (iv) 온라인 자료 및 자원 등의 개발.

- (d) 다양한 인권교육훈련 제공기관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 ;
- (e) 국제적 인권교육 훈련활동에의 참가 및 교류 촉진 ;
- (f) 자기평가 및 훈련활동의 적절성, 실효성 및 영향력 등에 관한 훈련생의 인식 등을 포함한 인권훈련활동의 평가.

3. 행위주체

- 34. 본 행동계획의 해당 부분 실행에 있어 주요 책임은 교육/고등교육 관련 부처에게 있으나 재경부 등과 같은 정부의 관련부처들과의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 대학교 등은 기관의 재량에 따라 책임의 정도도 다양해질 수 있다.

35. 위에서 언급된 행위자들은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가기관과 조직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일을 해야 할 수 있다 ;
- (a) 고등교육 교원 노조 ;
 - (b) 학생조합 및 협의회 ;
 - (c) 국회내의 교육, 개발, 인권/교육담당 위원회 및 자문단체 등의 입법기관 ;
 - (d) 옴부즈맨 및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인권기구 ;
 - (e) UNITWIN 네트워크 및 유네스코 의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관련기관;
 - (f) 국내 대학 네트워크 ;
 - (g) 국가유네스코위원회 ;
 - (h) 교육 연구기관 ;
 - (i) 고등교육기관 내의 시설을 포함한 국내 혹은 지방의 인권 훈련 및 자료정보 센터 또는 연구소 ;
 - (j) 고등교육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전문대 ;
 - (k) 비정부기구.
36.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 (a) 대중매체 ;
 - (b) 종교기관 ;
 - (c) 지역사회 지도자 및 지역사회내의 기관 ;
 - (d) 선주민과 소수집단 ;
 - (e) 기업.

D.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증진행동

37. 본 행동계획의 D절은 국가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관할권 하의 시민들의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성인 전문가를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와 같은 집단이 포함된다 :

- (a) 국내법 및 정부구조에 따라 공무원에는 정부부처나 국 혹은 과 등에서의 관료 및 정책입안자, 지방정부 및 지자체 뿐만 아니라 재정, 경제부처 등의 피고용인, 교사, 공공의료전문가 및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
- (b) 법집행관이란 예를 들어 경찰, 교도관 및 국경정찰대 뿐만 아니라 경찰력이 주어질 경우의 보안요원 및 군인 등을 의미한다 ;
- (c) 군인.

38. 위에서 언급된 전문직 집단은 상호 매우 상이한 역할과 책임, 제도적, 조직문화 및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제인권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주가 주어져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해당 전문가를 위한 전략들 중 일부만을 소개하게 될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것이다.

1. 수립배경

39.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과 관련하여 본 행동계획은 세계 인권선언 및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기인한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40. 유엔은 또한 그 외 전문가들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책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 기본원칙, 복무규정 등의 기타 국제인권법 문서를 개발하고 있다.
41. 예를 들어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문서들이 포함된다 :
- 법집행관을 위한 복무규정
 -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
 - 공권력 남용 및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
 - 강제 실종된 모든 자의 보호를 위한 선언
 - 비사법적, 자의적 및 즉결처형의 효과적 예방 및 조사에 관

한 원칙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원칙
-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유엔 최소 표준 규칙(도쿄규칙)
- 수감자 및 형사 피고인 처우에 관련된 문서(피고인 처우에 관한 최소 표준 원칙, 피고인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구금 혹은 구속 상태에 있는 모든 이의 보호를 위한 원칙)
- 청소년 사법에 관한 문서(청소년비행의 보호를 위한 유엔 지침(the Riyadh Guidelines) ; 청소년 사법행정을 위한 최소 표준원칙(the Beijing Rules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및 자유 수호를 위한 유엔 규칙 ; 형법 소송체계에서 아동에 관한 행동 지침).

42. 위와 유사한 국제 인권기준 등은 공무원 혹은 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추진전략

(a) 훈련 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

43. 인권교육훈련이 전문적인 직무수행 및 행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연수자의 소속 조직/기관의 해당 방침과 규칙 등에 연결됨으로서 지원되어야 한다.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 (a) 재직 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훈련 정책에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직 전 연수 프로그램에 대상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 ;
- (b) 재직 전 및 현직 훈련과 관련하여 전문직 자격부여 및 경력개발을 위한 필수과목과 같은 포괄적인 인권교육 정책 채택을 진작할 것 ;
- (c) 아동, 여성,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등과 같이 전문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취약집단을 다루는데 적합한 공무원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 ;
- (d) 인권훈련 제도화에 관한 사항;
 - (i)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의 인권훈련에 대한 의무는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해당 분야와 전체 사회 모두에 참여하면서 고위관리 등의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일회성 훈련으로 변형되지 말고 건전한 국가훈련 체계로 구축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
 - (ii) 모든 관련 과목에 인권원칙 및 기준이 확실히 통합되도록 진행 중인 재직 전, 재직 중 훈련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적절한 특정 인권훈련 과정을 개발한다 ;
 - (iii) 대학, 정부기관,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전문가를 배치한다 ;
 - (iv) 가능한 경우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Training of trainers)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교육자 양성을 위

한 교육(Training of trainers)란 피교육자들이 기관, 조직, 근무지로 돌아온 후 인권훈련, 자료, 지식 보급 등에 노고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교육자를 위한 교육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는 인권교육 방법과 교육설계에 관한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 ;

- (v)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인권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 (vi) 각 국가체계에 맞춘 제도화된 인권훈련에 관한 평가 및 영향 평가 매카니즘을 구축할 것 ;
- (e) 인권교육훈련은 단절된 노력이 아니라 인권 역량강화 구축전략의 일환이 되는 경우 인권훈련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에 관한 정책과 규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권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을 감사체계의 구축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등, 차별금지, 존중, 존엄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인권원칙의 연속선상에서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의 임용, 평가, 보상 및 훈련 정책 수립 :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정책: 그리고 특히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전문직으로서의 과제에 대한 규정(예를 들어, 법집행에서 총기 및 화기 사용에 있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부 규정, 여성폭력 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b) 훈련과정 및 도구

44.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성인을 위한 인권교육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a) 훈련 방법론과 실천에 관련하여 정확한 방법론적 원칙에 기반을 둔 인권훈련을 개발하는 것은 성인교육학 및 경험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i) 대상의 구체성

훈련은 특정분야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경찰, 보건 분야 근무자, 외교관, 군인, 개발 관련 전문가 등이 이들에 속한다. 피훈련기관이나 집단에 관한 훈련욕구사정에 대한 자문은 전문적 의무, 경험, 기대, 개인적 배경 및 훈련 참가자의 열망, 참가자의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등의 분석하기 위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교육 후 목표로 삼는 참가자의 지식, 태도, 행동 및 기술), 평가 전략을 구상하며 특히, 학습목표 달성여부 측정 방안 및 해당 훈련 외의 이행해야 할 활동에 대한 사정 등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

(ii) 관련성 및 실천적 내용

이전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훈련내용은 피훈련자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기준 및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인권이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특정 직업으로 인하여 접할 수 있는 인권쟁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전문가 집단의 기능이 무엇이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전문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인권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인권교육은 국제인권법의 일반적인 역사개요가 아닌 경찰의 수사방식에 관련된 인권기준을 교육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수색 및 압수, 체포 및 재판 전 구류, 무기와 화기의 사용, 치안, 응급상황 및 내부 갈등 상황, 군중 제압에 관한 합법적인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이 그 예이다. 경찰을 위한 인권교육은 또한 아동, 여성, 이민자, 난민, 장애인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인권에 관해서 다루야 한다. 대상에 따라 경찰명령, 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내부규칙, 행동규범, 재직자를 위한 교육, 반차별적이고 평등한 채용과정, 신입사원 심사, 지역사회 치안전략, 고충처리제도, 법 위반시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공표, 경찰의 현장검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개시할 의무 등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

(iii) 참여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훈련 기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시청각 방법으로 브레인 스토밍, 역할놀이, 집단작업, 사례 연구, 패널토의 및 견학 등의 창의적이고 상호적인 성인교육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계획된 교육은 훈련자 스스로가 인권침해(예를 들어 태도와 행동에서 성별이나 인종에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한 인식 강화)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할 뿐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두 측면 모두의 잠재력에 대한 피훈련자의 인권감수성을 자극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해야 한다 ;

(iv) 동료 간 학습(Peer learning)

동료 간의 학습, 즉 경찰 및 군인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 동료들 끼리 서로 가르쳐 주는 방법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대상에 따라 그 특유의 조직문화에 더 접근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동시에 인권전문가들이 학습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에 인권 기준이 지속적이고 완전히 반영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

(v) 자긍심의 역할

피교육자가 성인인 경우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훈련생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간의 서로 다른 역할, 책임 및 조직문화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구분되는 내용의 훈련내용 개발을 위한 훈련내용에 관한 사항 :

(i) 폭넓은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위의 37(a) 참조) 이 범주에 속한 인권훈련 내용은 실제로 다를 것이다. 일례로 사회복지사를 위한 인권훈련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수감자, 난민 및 이주민 등과 같은 취약집단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행동이 특히 이러한 사람이나 집단의 인권을 위협할 때 이들의 인권보호를 보장해야 할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인권훈련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치적, 제도적 절차를 통한 자율성의 실천 등의 모범적 가버넌스(good governance) 배경의 인권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질 것이다. 외교관을 위한 인권훈련은 특히, 인권조약 및 메카니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외교관으로서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자국이 국제인권발전에 공헌하고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고 있을 것이다.

(ii) 경찰의 조사방법: 수사 및 압수: 체포 및 미결수: 총기 및 화기의 사용: 풍기문란 단속, 응급상태 및 내란: 합법적 집회의 통제 수단 등과 같은 사항은 경찰의 인

권훈련에서 다양한 경찰기능을 다루는 인권기준을 담고 있어야 한다. 경찰 인권훈련에는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집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훈련참가자에 따라 인권관점이 경찰 명령권, 관리 및 통제의 사항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명령, 행동수칙 개발, 신입 및 재직 중 훈련, 공정하고 차별없는 채용 절차, 신규채용에 대한 심사절차, 지역사회 치안전략, 진정 접수 매카니즘의 구축 및 즉각적인 응답의 의무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을 포함한다.

- (iii) 교도관을 위한 인권훈련은 훈련자에게 교도소의 운영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익숙하게 하고 교도관 실무를 위해 인도주의적이고 효과적인 기법의 실천을 용이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사법적 기능의 실천을 보여주고 일상적인 교도관 업무에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되도록 훈련생을 준비시키는 것 또한 교도관 인권훈련 내용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수감자 및 미결수의 신체 및 정신건강, HIV/AIDS: 청소년, 여성, 장애인, 귀환 수감자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범주의 수감자 및 미결수의 치료: 수감자의 기록: 수감자의 행정, 훈련 및 고충처리 절차: 폭력의 사용: 처벌과 상환 청구권 절차: 만기 절차 및 진정: 가족, 법률상담가 및 의료인 등을 포함한 외부세계와의 접촉: 신앙 및 예배

의 자유: 교도소내의 노동(예를 들어 노동조건, 보수 등): 및 교육과 여가 등을 포함한 수감자 및 구금자를 위한 시설에 관련한 사항 또한 인권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 (iv) 군인은 전투와 관련한 과업과 관계하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대해 훈련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전쟁의 대가를 치루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 직업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또한 인권훈련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점증적으로 시민경찰임무, 응급상황 하에서 명령유지 및 공공의 안전 그리고 국제평화유지 운영에 대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의무 수행은 인권기준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 뿐 만 아니라 일상적인 군인 업무에 이러한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요구하고 있다. 반면, 1949년 제네바협약과 그 선택적 의정서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군인 훈련은 무력분쟁의 국제법(인도주의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훈련 그 자체가 눈에 띄게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 (C) 교육교재에 관련하여 교육교재가 위에서 언급된 방법을 반영해야 개발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와 지침서의 내용은 인권원칙에 부합하며 해당 대상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고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C) 학습 및 근무 환경

45. 인권훈련은 인권이 실천되는 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이행될 수 있다 :

- (a) 행동강령, 공무원과 근무자를 위한 직업윤리, 모든 분야의 인권기준을 포함하는 고용인을 위한 실천 강령, 피고용인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헌장 등 분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문건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 ;
- (b) 인권관련 행사, 대회, 시상, 장학금 수여 및 경품 등을 통하여 인권분야에서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축하하고 격려할 것 ;
- (c) 인종차별, 성폭력 등과의 전쟁 등과 같은 공식적인 행동계획의 채택을 포함하여 법집행관, 지방정부, 군인, 나아가 더 넓은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것.

3. 행위주체

46. 본 단원의 행동계획 구현을 위한 주요책임은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예를 들어 개별 국가 편제에 따라 공공 행정기관, 내무부, 국방부 등) 및 협력하는 기타 관련 정부 부처(예시 : 재경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 등에 있다.

47. 인권교육 관계자들은 다음에 나열된 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기관 및 조직들과 협력하여 작업해야 한다 :

- (a) 공무원훈련전문대학, 행정학교,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

- 해당집단이 일하는 곳 ;
- (b) 공무원 및 법집행관 노조 ;
- (c) 내무, 국방관련 국회의 인권위원회 및 자문단체 등을 포함한 입법 기관 ;
- (d) 유네스코, 인종주의 및 차별철폐 도시연합(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등과 같은 국내 혹은 지역적 네트워크 및 협회 등에 속하는 기관, 지자체 등 ;
- (e)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등의 국가인권기구 ;
- (f) 국가적 및 지역적 인권자원/교육센터 ;
- (g) 비정부기구 ;

48. 이외에 아래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

- (a) 언론매체 ;
- (b) 종교 기관 ;
- (c) 지역사회 지도자 및 지역사회기관 ;
- (d) 선주민 및 소수집단 ;
- (e) 기업.

E. 국가이행절차

1. 이행단계

49. 현재 본 행동계획의 이행에 있어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상황, 우선과제와 역량 등에 따라 실천 가능한 현실적 목표와 수단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각국의 이행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50.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의 국내수준에서의 계획, 이행, 및 평가 등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진행이 개요로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의 참여 가능한 모든 관련 행위주체의 개입을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위의 C.3절 및 D.30절 참조).

제1단계: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 내의 인권교육 및 훈련 현황 분석

□ 행동조치

위의 C절과 D절에서 언급된 전략들을 상기하기 바란다 :

- 고등교육 및 가능한 범주의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각 관련 분야별 국가초선연구(national baseline study)의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수집 및 분석 ;
-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 등에서의 인권교육 훈련 현황(현재 수행 중인 사업 및 해당 사업의 단점과 장애요소 등을 포함)
- 기존의 정책 및 법률
-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기존의 우수 사례

- 해당 분야의 인권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 정부기관, 국가인권기구, 연구기관 및 비정부단체 등 현재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 평화교육, 세계화교육, 다문화 교육, 비교문화 이해교육(문화간 이해교육), 시민권 및 가치관 교육과 관련된 대학교 프로그램 및 전문가 윤리교육 등과 같은 보충적 사업 현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사업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효과적인 사례나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결정할 것
- 해당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실행에 있어서의 이해득실 및 기회와 한계성 등을 분석하여 주요 특성과 영역을 파악할 것
- 이행수준에서의 결론을 도출할 것.
- 손실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수단도 고려하면서 인권교육을 통해 어떻게 이점과 학습된 교훈을 축적할 것이며 그렇게 얻은 기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또한 생각해 보자.

□ 산출물

- 국가수준에서의 기초선 연구(the national baseline studies) 준비 및 국가적 이행전략 착수를 위한 위의 연구결과의 국내 보급

제2단계 : 우선순위 설정 및 국가 이행전략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
확인, 이행 관련 활동의 예측(최소 2010-2014년 기간
동안)

□ 행동조치

- 각 목표분야에서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 목표를 설정할 것.
- 참고자료로 본 행동계획을 활용하여 목표를 확정할 것.
- 가장 긴급하고 억압된 욕구 및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서 진술한 국가 기초선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선 과제를 설정할 것
- 즉각적으로 특위활동(ad-hoc activities)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보장할 수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개입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
- 서로 다른 활동가들 간의 연합과 상승작용(시너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 아래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 투입 - 인력, 재정, 시간 등 활용가능한 자원의 배분
- 활동 (과제, 책임, 기간, 단계별 주요사항)
- 국가이행전략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 산출물 - 법률, 행동강령, 복무규칙, 교육자료(신규자료 또는 수정보완본 교재), 훈련프로그램, 차별금지정책 등의 구체적 결과물
- 결과물 - 달성되어야 할 결과물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

제3단계 : 이행과 모니터링

□ 행동조치

- 국가이행전략 및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서비스와 이해당사자 및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계획된 활동들의 실행 사항을 보급할 것
- 기 파악된 주요 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에 대한 진행보고서

제4단계 : 평가

□ 행동조치

-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활동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자기평가(Self-evaluation) 및 독자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것
- 달성된 결과를 확인, 공지, 보급할 것

□ 산출물

- 국가이행전략 결과에 대한 국가보고서
- 이를 통해 습득하게 된 교훈을 기반을 둔 향후 행동방안에 대한 권고

2. 조정 및 협조사항

51. 본 이행주체는 정부이므로 정부는 국가이행전략의 세부 계획수립 및 조정, 이행,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관련부처를 결정할 책임을 갖고 있다. 조정부처는 적절한 기관과 부처 및 책임자와 협력해 결정한다. 또한 해당 조정부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조약기구, 특별보고관, 국가별정례인권검토 등)에 제출할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국가기관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는 본 행동계획에 따른 인권교육 및 인권훈련 관련 추진사항이 위 보고서 내에 포함한다는 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52. 해당 조정부처는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종결시 정부가 최종 국가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F. 국제협력과 지원

53. 국제협력과 지원은 국가이행전략 지원에 있어 인권교육훈련과 관련된 국가적 역량강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한 국제협력과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

- (a) 특정기관 및 유엔 대학 등을 포함한 유엔 체계 ;
- (b)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 의료 및 보건서비스 : 약물 및 마약 밀매 방지: 난민, 이주민, 국경수비 : 및 범죄절차 등과 같은 유엔에 소속된 전문가 훈련기관 등 ;
- (c) 유엔에서 규정하는 평화대학교(UPEACE) ;
- (d) 기타 국가간 국제기구 ;
- (e) 지역적 국가간 기관 ;
- (f) 관련 국제 및 지역적 전문가 네트워크 ;
- (g) 국제 및 지역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 ;

- (h) 국제 및 지역 비정부단체 ;
- (i) 국제 및 지역 인권자료 및 문서(기록물) 관리기관 ;
- (j)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또는 국가 간 기금조성기관(bilateral funding agencies) ;
- (k)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발기관.

54. 자원을 극대화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본 행동계획의 일관성 있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행위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55. 위에 언급된 조직과 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 (a) 국가이행전략 세부사업 추진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
- (b) 기타 국내 활동가들이 개입할 경우 특히, 국가 및 지역 비정부기구, 전문가 단체, 고등교육기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 (c) 우수사례, 자료, 기관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보급함으로써 모든 수준에서의 정보공유를 권장해야 한다 ;
- (d) 인권교육활동가들 간의 기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모든 단계에 있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상하도록 한다.

G. 조정 및 평가

56.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유엔체계의 관련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국제적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해당 웹사이트에 특별히 페이지를 할당함으로써 각국의 추진사항이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57. 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종결에 즈음하여 각국은 본 행동계획에 따라 이행된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며 평가가시 C, D, E절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회원국들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각국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종합하여 전 세계의 이행사항을 포괄하는 종합보고서를 준비하여 2015년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 록

부록 1 제10차 인권이사회 결의 10/3(Resolution 10/3)

제10차 인권이사회 결의 10/3.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이사회,

‘인권에 관한 공공정보 세계캠페인’ 2004년 12월 10일 59/113A, 2005년 7월 14일 59/113B, 2006년 3월 15일 60/251)을 시작하기로 한 1988년 12월 8일 43/128 일반이사회의 결의에서, 인권이사회가 인권교육 및 학습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05-2007) 및 제2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2005년 4월 20일 2005/61 결의 및 인권보호 분과위원회 2006년 8월 24일 2006/19 결의에서도 인권교육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인권분야에서의 공공정보의 개발에 관한 이사회 2007년 9월 28일 6/9결의와, 이사회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1차시기를 2009년 12월까지로 연장한 2007년 9월 28일 6/24결의를 상기하면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상의 49절 부터 51절을 고려하면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종결시 제1차 프로그램의 마무리 절차로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각 지역에서의 입법 정책, 정책입안, 교육 및 학습과정, 교과서 수정, 교사 교육, 학교 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평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거쳐서 유엔 부설 학교체내의 인권교육에 대한 조정위원회(United Nation Inter-Agency Coordinating

Committee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에 제출해야 한다.

1.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 대한 공지를 작성해야 한다(A/HRC/9/4);

2. 2010년 1월 1일에 시작할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 국가인권기구,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과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제12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유엔 회원국들은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 활동가들 등의 지원을 받아 제1차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보고서 작성준비를 시작하고 해당 보고서는 2010년 초까지 유엔 부설 학교체내의 인권교육에 대한 조정위원회 (United Nation Inter-Agency Coordinating Committee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에 제출하도록 한다.

4. 제12차 인권이사회에서 동일한 안건으로 본 주제에 대한 논의여부를 결정한다.

21번째 회의
2009년 3월 25일
(표결없이 채택됨)

부록 2 제12차 인권이사회 결의안 12/4(A/HRC/RES/12/4)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관련 사항 제2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정 및 결의(A/HRC/12/4) 주요내용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연속적인 단계를 포함한 연속시리즈로 구성된 포괄적인 과정이고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및 훈련에 포함시켜야 함으로 회원국들은 초중등 학교체계에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아래에 명시된 새로운 사항에 초점을 두어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구현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기 바란다 :

1.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2차 시기의 초점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를 고려한다.(A/HRC/12/36)
2.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에 초점은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교사 및 교육자 대상 인권교육 그리고 공무원, 법집행당국과 군인을 대상으로 함을 결정한다
3.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1차 시기의 행동계획을 준수하는 취지에서 아직 초중등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병합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병합할 것을 장려한다.
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기존 자료와 자원을 바탕으로 특히 유네스코와 비정부기구 활동가를 포함한 관련 정부간 기구와의 협력 및 각국과의 논의 하에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2차 시기(2010-2014)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행동계획에 대해 각국과 상의하고 15차 인권이사회(2010. 9.)에서 행동계획 제출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제2차 시기 행동계획은 구성이 적절해야 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최소한의 행동제시를 수반하고 모든 해당 당사자가 맡은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5.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에의 지원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자국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유엔의 지원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6. 회원국들로 하여금,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1차 시기에 대한 국가평가 보고서를 ‘학교시스템 내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유엔 부처간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상기시킨다.

7.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1차 시기 실행여부에 관한 국가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위의 ‘조정위원회’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비정부단체 등과의 협력 하에 최종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8. 제15차 유엔 총회에서 동일한 의제 항목 아래에서 본 쟁점을 고려할 것을 결정한다.

부록 3 제15차 인권이사회 결의안 15/11(A/HRC/RES/15/11)

제15차 인권이사회

안전 항목 3

개발권을 포함하여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증진 및 보호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¹

15/11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 제2차 행동계획의 채택

인권이사회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기타의 국제인권조약에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는 교육이 인권의 존중과 기본적 자유를 강화해야 할 목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의 당사자임을 재확인하고,

총회가 인권에 관한 공공 정보 국제 캠페인을 시작한 1988, 12. 8일, 총회 결의 43/128 그 중에서도 인권이사회가 인권교육 및 학습을 증진해

¹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 및 결정은 인권이사회 제15차 회기 회의록(A/HRC/15/60)에 실릴 것임

야 한다고 총회가 결정했던 2004. 12. 10일, 결의 59/113 A, 2005. 7. 14. 결의 59/113 B 그리고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연속적 시기의 형식으로 구성했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소위원회 2006. 8월 24. 결의안 2006/19 등을 상기하면서

또한 2007. 9. 28일 결의안 6/9와 6/24, 2008년 9월 24일 결의 9/12, 2009년 3월 25일 결의 10/3 및 2009년 10월 1일 12/4 등을 상기하고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연속적인 시기체계인 연속적인 시리즈로 구조화했던 이유는 세계프로그램에 의해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절차로서 자리잡기를 의도했음을 상기하면서,

회원국들은 해당 세계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초중등학교 체계에서 인권교육을 계속 시행해야 하고 차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교사 및 교육자, 공무원, 법집행관 및 모든 직급의 군인 등에 대한 인권훈련프로그램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회원국의 자문을 받고 유네스코 같은 관련 정부 간 기구들 및 비정부기구의 활동가 등의 협력을 받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 시기 행동계획 초안(2010-2014)을 준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 시기(2010-2014) 행동계획을 채택하고자 한다;

3. 모든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해당 세계프로그램 내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전시켜 개별 국가의 역량 내에서 행동계획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라;

4. 인권이사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게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본 행동계획이 적절하게 국가적 실행을 촉진하고 필요시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관련된 국제적 노력을 조직화를 요청하는 바이다;

5. 본 행동계획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각이 허용하는 권한 내에서 유엔 체계의 조직, 법인 혹은 기관들 뿐 만 아니라 기타 모든 국제적, 지역적 정부 간 기관 및 비정부기구들에게 기술지원을 증진 시키고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6.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인권기구가 본 행동계획과 부합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7.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는 당사국과 정부 간 및 비정부기구 등에 본 행동계획을 널리 보급할 것을 요청한다.

8. 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실행을 계속하여 2012년 동일한 안건 조항으로 논의할 것을 결정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존하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실행 현황보고서를 준비하여 2012년 마지막 회기까지 본 이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부록 4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의견(A/HRC/12/36)

제12차 인권이사회

A/HRC/12/36

2009. 8. 20.

안건 항목 3

“개발의 권리를 포함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증진 및 보호”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의견 –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요 약

본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결의안 10/3에 의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2차 인권세계교육프로그램의 목표분야 또는 주제영역 등에서 포함될 수 있는 중점사항에 대해 정부, 국가인권기구, 정부 간(intergovernmental), 지역 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검토내용과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참여기관들은 2009. 6. 3. 부터 2009. 7. 28. 까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하였고 본 보고서는 위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을 종합한 내용이다.

응답서에 포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식은 몇가지 사항의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고 해당 종합적 결론은 이 보고서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상당수의 응답기관은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목표인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아직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답변자는 교사 및 교육자에 대한 인권훈련 없이는 인권교육이 학교체계에 제대로 통합될 수 없으며 교육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답변자들은 또한 전문가 양성과정 또는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을 차기 목표 분야로 지목했다. 특히, 법집행관과 같은 의무이행자 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또한 지적되었다. 당사국의 현실과 연관된 주제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빈곤퇴치와 인권교육의 역할, 차별금지 및 평등원칙 등의 중요성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기간으로 5년을 제안한 경우가 다수였다.

내 용

I. 서론	69
II. 정부 제출 의견서	71
III.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제출 의견서	77
IV. 유엔 기구 및 전문기관, 정부 간(intergovernmental) 및 지역별 조직 등의 제출 의견서	86
V. 비정부기구 제출 의견서	88
VI. 결론	96

I. 서론

1.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10/3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로 하여금 유엔 회원국, 국가인권기구, 정부 간(intergovernmental) 및 비정부조직 등과의 자문절차를 통해 2010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목표 분야 및 주제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제12차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본 보고서는 해당 결의안에 의거하여 제출된 것이다.
2. 2009. 6.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유엔 회원국, 국가인권기구, 정부 간 조직 및 비정부조직 등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웹사이트에 공지되었고 Global Human Rights Education LISTSERV에 공표되었다.
3. 2009. 7. 28. 총 59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회원국 17건, 국가인권기구 15건, 국제기구 8건 등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6곳의 비정부조직 및 3명의 개인이 제출한 의견서도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요약하고 해당 의견서 내의 정보와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몇가지의 주요사항을 결론으로 도출하여 포함시켰다.
4.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독일, 이탈리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몰도바공화국, 루마니아, 슬

로베니아, 스위스,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북아일랜드 등이다.

5. 국가인권기구 중에는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Afghanistan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Mexico),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Luxembourg), 아일랜드 인권위원회(Irish Human Rights Commission), 카메룬 국가인권과 자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Freedoms, Cameroon), 인도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ia), 한국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몽고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ongolia),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New Zealand Human Rights Commission), 니카라과이 인권위원회(Procuraduri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de Nicaragua), 캐나다 서스캐처원 인권위원회(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Canada), 우간다 인권위원회(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우크라이나 국회인권위원회(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 등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6. 유엔 아동기금(UNICEF), 유엔 인구기금(UNFPA),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WFP),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 국제해사기구(IMO), 기본권을 위한 유럽연합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등의 유엔 기관 및 전문기관, 국제 및 지역조직 등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7. 의견서를 제출한 비정부조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영국 본부, 국제사면위원회 몽골지부, 일본의 부라쿠(Buraku) 해방리그, 카메룬의 ‘권리와 인간의 의무에 관한 연구학회(Cercle de recherché sur les droits et les devoirs de la personne humaine), 카메룬의 연구, 환경, 품질에 대한 공동이니셔티브(Cercle d’initiative commune pour la recherche, l’environnement et la qualité), 스리랑카의 빈곤한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이사회(Council of Human Rights of Deprived Communities),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이집트 협회(Egyptian Association for Community Participation), 스위스의 유럽과 제 3세계 센터(Europe-Third World Centre), 미국의 인권교육협회(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스위스의 국제사회복지대학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 일본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인종을 반대하는 국제운동-일본 위원회(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Japan Committee), 이탈리아의 Ius Primi Viri, 태국의 인구 및 지역사회 개발협회(Popul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일본의 Soka Gakkai International, 인도의 사회평등연대 인권센터(Solidarity for Social Equality Human Rights Centre), 미국의 세계여성연맹(Worldwide Organization for Women), 요르단, 케냐, 터키의 개인 연구자들이다.

II. 정부 제출 의견서

8. 아르메니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대상 집단은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교장과 교사 특히, 사회과학, 법과 인권과

목을 담당하는 교사들, 대학교원, 지방자치단체대표, 재판관과 변호사를 포함한 법집행관들, 경찰, 특히 미성년자를 담당하는 경찰 및 공공검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대표 및 언론관계자 등이 포함한다. 제2차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이주문제에 중점을 둔 노동권을 지목했다. 제2차 프로그램 실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으로 제시했다.

9. 캄보디아 정부는 교육/청소년/체육부 (MoEYS)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밝히면서 MoEYS가 교육 체계 내외에 종사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관련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확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MoEYS의 기술팀이 본 준거들에 대한 교육과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10. 코스타리카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생식에 관한 권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지하고 공교육부가 이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 및 생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당한 의료서비스 역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2차 기간 동안 이 주제를 중점분야로 채택한 코스타리카의 명확한 의지는 위에 명시된 과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는 답변을 통해 현 코스타리카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 및 공교육부의 구체적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했다.
11. 사이프러스 정부에 따르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의 대상 부문은 학교 내의 이주아동과 장애아동이며 따라서 주제영역은 이주아동과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2. 독일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상부문을 강조했다 : 초중등학교 교사 (대학교 인권교육 뿐 아니라, 학교교사를 위한 서비스 교육과정 포함), 법률문제전문가(법률교육과 직업훈련에 인권교육 통합), 이민자, 망명자, 재소자 등과 같은 취약집단을 다루는 경찰 및 기타 보안관련 종사자(인권교육이 기본교육일 뿐 아니라 서비스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주제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은 차별에 대한 보호와 반차별적 사회적 행동에 대한 교육, 종교에 대한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자유 등에 집중할 수 있고 제2차 기간은 4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이탈리아 정부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제1차 때의 경험 및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특히, 법무부, 사법부, 내무부, 법집행관(문관 및/혹은 무관), 외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일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주요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탈리아는 해당 세계프로그램의 구조와 기간 등과 관련하여 몇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모든 수준에서 전반적 인권범주에 걸친 인식증진 뿐 아니라 상이한 환경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 장치 마련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탈리아는 종교적 자유의 문제를 특별히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14. 일본 정부의 시각으로 제2차 기간 동안 인권교육의 대상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09년 더반검토회의(The 2009 Durban Review Conference)의 의제를 따라

외국인의 인권보호가 의미있는 주제라 할 수 있고 제2차 시행 기간은 5년이 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5. 몬테네그로 정부는 부모, 성인, 대학교수, 외국어학교 교사, 비정부 조직 등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목표 분야가 될 것을 제안했다.
16. 모로코 정부는 유치원교육, 고등교육과 언론교육에 노력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유아시기부터 인권주제와 접촉을 하게 되면 자신의 환경에 있는 타인과 보다 잘 어울릴 수 있고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하는데 있어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인 인권주제로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무례함에 대한 저항을 제안했고 이에 필요한 분석 및 실천계획의 구현을 위하여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17. 몰도바공화국 정부는 8개 항목의 주제별 영역과 해당 대상 집단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일반인); 고문예방 및 퇴치(구금시설); 집회의 자유(일반인); 아동권리 및 보호(교육기관); 청소년 사법(법집행기관); 교도소 체계에서의 인권홍보(교도소 직원 및 재소자); 인권지식의 강화 (교도소 직원); 인권교육 및 훈련(재소자)를 포함한다.
18. 루마니아 정부는 이주자에 대한 교사교육에 주력할 것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제적인 이주자의 인권, 그중에서도 이주아동의 권리를 강조했다.
19. 슬로베니아 정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초등학교

육에서의 제3단계(12-15년), 중등교육(15-19년) 및 교육과 훈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주제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권, 일할 권리, 공정한 임금과 휴식, 품위있는 삶의 기준, 문화와 과학 발전에서의 협력, 평등, 보호받을 권리, 이동, 주거, 시민권 등과 같은 전 인류의 지구적 문제의 강조, 비폭력, 관용 및 협력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 및 사회적 역량의 개발 등의 강조를 제시했다.

20. 스위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제안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과학, 기술 및 기타 과학 활동,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과학과 연구의 혜택/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생명윤리(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 :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참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단체와 언론인을 위한 인권훈련에 대해 언급했다.
21.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토고 정부는 대학 및 전문학교 등 인권교육을 정규교육 이외의 수준으로 확장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효율적 인권교육을 위해 위의 교육기관의 교육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가치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매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 이외에도 일반시민들도 인권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에 대한 공헌이 목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인권교육이 인권의 전체적인 맥락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교육단계에서

의 구체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프로그램은 4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22. 터키 정부는 제2차의 주요 대상 집단은 학교 교과서 제작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 특정 전문가라고 판단하면서 차별을 철폐하는데 전세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반영하는 모든 이에 대한 반차별 및 평등을 주요 주제로 결정하고 관용을 강조했다. 이 방침은 학교 내에서의 차별 및 폭력 퇴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되며 터키 정부는 기간은 2010-2014를 제안했다.
23.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률교육에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병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차 세계프로그램의 중점 주제 중 하나로 "권리문화"를 제시했다. 인권교육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법의 주간 (Week of Law)"을 통해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법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교육,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 제2차 프로그램의 목적 실행을 위해 자국의 전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관 및 비정부조직, 정부 간 기구, 그리고 국제인권기구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자신의 활동을 보고해야 하고 5년간 제2차 프로그램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24. 영국과 북아일랜드 정부는 초중등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증진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충분한 진전을 위해 아직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일반적 여론을 지적했다. 초점은 학교와 실무자에게 맞추어져야 하며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이 의제를 설정하는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또한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영향력 검토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25. 각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드러난 일반적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인권교육 대상은 정부 정책입안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경찰, 교도관, 사법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고문방지에 대한 교육에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으로 지적된 기타 집단에는 변호사와 교사 등이 포함된다. 관심주제로 영국은 특히, 인권의 각 영역별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인권, 개발 및 새천년 개발목표의 조화로운 병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공정무역과 고용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Ⅲ.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제출 의견서

26. 아프가니스탄 독립 인권위원회(The Afghanistan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전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1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모든 회원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전략 및 정책, 프로그램 기획, 인권교육 과정개발, 교육과 교재 개발, 교사 및 교원의 사전-직무 훈련, 교수 및 학습 방법론, 교사 연수 및 기타 학습에 평가가 집중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모든 분야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10-12학년 과정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제2차 프로그램 이행기간은 5년이다.

27.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교육은 인권문화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교육의 전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법원 공무원, 일반 공무원, 민간부문 종사자, 일반학생, 대학생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인권교육 사업은 선주민, 특정 신앙 혹은 종교 공동체 등에서의 특정 인권 쟁점을 직면하여 해결하는 해당 지역사회의 욕구를 전파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원, 인권교육의 국가적 차원의 이행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를 제2차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28. 캐나다 연방정부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주정부 및 지자체 간의 협의 하에 제2차 세계인권교육에서는 장애인 인권교육 부문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캐나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애가 차별의 요소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경제적 통합에 가장 큰 장벽은 법적 보호의 부족이기보다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교육 및 기타 관련 계획들은 태도 변화에 기여하는 교육의 역할을 고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주류사회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및 현실적 개선은 편견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교육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9. 캐나다 연방정부의 답변 이외에 캐나다 서스캐처원 인권위원회(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Canada)는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실행된 초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각 개인이 인권과 이에 따른 책임감에 대해 배우고 보다 폭넓은 문화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1차 실행에서 상당한 성과가 달성되었지만 각 국가가 제출한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아직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서스캐처원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고등교육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특히 교사교육)으로 확장시킬 것을 제시했다.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비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경찰 및 정부관계자를 포함한 의무이행자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인권의 관점을 모든 공공교육, 서비스 및 기타 활동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 및 빈곤 아동의 상황과 같이 시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이행기간을 5년에서 10년 동안으로 제안했다.
30.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Mexico)는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현재 멕시코 학계에서 인권이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인권교육은 지

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에 대해 강조된 특정 주제의 예로는 평화교육,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다문화 교육 등이다.

31. 룩셈부르크 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Luxembourg)는 비정규 교육부문을 대상 분야로 지목했다. 교육자들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현상 및 기본적인 권리와 연관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쟁점에 민감하게 눈뜨게 하는 교훈적인 원칙의 구체적 교육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e-러닝 등 교사의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은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비정규 교육은 역량이 부족한 젊은이들, 학교 입학이 불가능한 이들, 소수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과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권교육은 단순히 학문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철학적인 본질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경찰, 행정관계자, 기업 및 기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32. 인권교육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소수집단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에 걸친 다양한 위기상황, 높은 주택가격, 고용 불안 및 과도한 부채 등은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고려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지속되는 빈곤은 신체적, 정신적 인권 침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장애요소가 되므로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우선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33. 아일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권교육의 발전여부에 대한 아

일랜트 인권위원회(Irish Human Rights Commission)의 상세한 보고에 따르면 유엔 인권교육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과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기간 동안 개발된 계획에 기반을 두고 시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과제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노력 증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7월까지 소수의 회원국들만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행동계획의 2차 단계를 완료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동계획 및 전략을 개발했다. 따라서 제1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고 현 시점까지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지고 아울러 남아있는 과제를 공략하기 위해 그 이행여부를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평가해야 하는데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4. 아일랜드 인권위원회는 또한 제2차 프로그램의 초기 작업은 시민과 공무원, 특히,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인권규범과 원칙에 대한 교육은 교사, 경찰, 구금시설 종사자, 의료전문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공무원,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국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및 현직 훈련이 그 주를 이루어야 한다. 이 교육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이어야 하며 법률, 정책, 의사결정 및 서비스 관계자들에 대해 각 직업과 업무에 적합한 맞춤형(tailor-made) 교육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인권체계를 적용시켜야 하며 제2차 이행기간으로 10년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35. 카메룬 국가인권과자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Freedoms, Cameroon)는 비록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배운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은 권리보유자(rights holders)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의무 이행자(duty bearer)로 확장되어야 한다. 부모, 교사, 공공기관당국 및 이외의 모든 이들은 아동의 권리 효율적 보호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차별, 학교와 가정에서의 남녀평등, 참여의 권리,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 지도자의 책임과 같은 주제는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36. 인도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ia)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의 아동(또는 학생)과 교사를 목표대상으로 지목했다. 첫째, 인권교육은 대학교육을 포함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되어야 하고 역할 모델(role model)인 교사는 민감한 인권감수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통제구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제2차 시행시기에서는 정부 및 정부기관이 임명한 이들 및 정부 실무자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번째 목표집단은 여성, 취약집단,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노동자와 같은 권리보유자(rights holders)가 될 수 있다. 제2차 프로그램의 주제영역은 식량, 물,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 즉,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남녀평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도 자국에 적용되는 특수한 주제영역으로는 식량 확보, 교육의 권리, 의료서비스, 보건 및 청결에 대한 권리, 각종 시설물의 환경, 에이즈, 개발권 등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될 것이다.

37. 한국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에는 대학과 대학원의 정규교육과정과 같은 고등교육 체계 전반으로 인권교육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표명했다. 지방대학의 인권연구기관 개발 및 변호사, 법집행자,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전, 상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하며 인권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사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도록 한다고 보고했다. 학교, 공공 및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대상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가운데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 기업인, 국가 및 지방 공공 서비스 공무원(경찰, 검찰, 교도소 및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각별 강조했다. 주제상의 우선순위는 빈곤층의 인권보장, 식량 및 주거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사회권의 증진, 자유권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개인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성에 대한 불평등 해소 또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략해야 할 우선순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라고 언급했다.
38. 몽고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ongolia)는 제2차 세계프로그램에서는 교육체계의 세번째 단계 즉,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습득한 인권관련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단정했다. 교사, 사회복지사 및 의료종사자들과 같이 일반대중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교과 과정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체계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는 구체적인 시기는 각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달라져야 하며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은 2년 내지 4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9. 뉴질랜드 인권위원회(New Zeal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초·중고등학교 체계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국제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의 의무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부의 의무이행자에 대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을 정부의 입법 및 정책 입안기준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0. 뉴질랜드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평생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지속적 교육,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중매체와 소셜매체 관련자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대중들의 인권접근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또한 대중매체 관계자로 하여금 인권을 고려하여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된다. 장애인 권리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제2차 이행기간은 우선 3년으로 지정하되 진행상황과 검토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41. 니카라과이 인권위원회(Procuraduri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de Nicaragua)는 국가 경찰, 군인, 출입국관리소 직원, 판사 및 검사 등과 같은 법집행인을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 활동가 및 지역사회 지도자를 위한 비정규교육, 구금시설내의 거주자를 위한 인권훈련 등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국가,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 및 대중매체의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42. 우간다 인권위원회(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는 제1차 이행 기간동안 자국의 성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제출했고 사범대와 국립교원대학에 인권 교육을 통합시켜 초중등학교에서의 효율적 인권교육을 달성하고 학생과 교사로 하여금 인권법과 원칙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습득하고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각 정부 부처는 정책 개발시 인권 중심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부당함, 불평등 및 빈곤 등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기간은 5년으로 제안하고 있다.

43. 우크라이나 국회인권위원회(Ukrainian Parlia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해당 제2차 세계프로그램에서는 빈곤의 증가,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주,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 등과 관련된 편견, 환경권 위협과 같은 현대사회의 과제 및 인권에 대한 위협 등 사회발전과 관련된 현황을 주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특히, 자연환경, 물, 식량 등과 관련된 권리인 환경의 중요성을 표명했다. 제2차 기간에는 대중매체로 하여금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계몽하도록 권장하고 인권교육과정은 고등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IV. 유엔기구 및 전문기관, 정부 간 및 지역별 조직 등 제출 의견서

44.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인권교육을 초중등교육에 통합시키는데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제2차 프로그램에서도 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기관에 국한된 교육에서 진일보하여 대중의 인식 증진을 필요로 하므로 보다 광범위한 집단을 인권교육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제영역에 관해서는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모두 2010년도 말에 주요 기념일을 즈음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동 및 여성권리의 신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5. 유엔인구기금(UNFPA)은 선주민 및 장애인 등 이들 두 집단에 대한 입법 및 사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2차 세계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에는 이들 집단의 권리증진에 초점 맞추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 선주민 권리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및 장애인권리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중심으로 선주민과 장애인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들 집단의 욕구를 수렴하여 이들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초등과정에서 제3과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걸친 교육체계의 강화가 이 두 집단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6.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제2차 기간 동안은 모든 아동 및 청소년 (특히, 무국적자 아동)의 교육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교육기관 및 교육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있어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이 여전히 거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빈곤, 분쟁상황 또는 강제이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취약집단의 아동들이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의 일부로서의 교육에 대한 권리 옹호가 필요하며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권 또한 증진시켜야 한다고 표명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또한 제2차 세계프로그램 기간 동안은 폭력과 착취가 없는 학습 환경의 필요성 홍보 및 질적 교육에의 접근 가능성 또한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47. 국제노동기구(ILO)는 인권교육이 착취로부터 아동(특히, 소녀)을 보호하는데 핵심요소인 점을 감안하면서 제2차 프로그램에서는 소외되고 착취된 아동을 주요 대상 집단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최소3년의 이행 기간을 권고하고 있다.
48. 유네스코(UNESCO)는 각 유네스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에서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사전교육 및 수시교육, 적절한 자료 및 명확한 지침이 결여된 현실을 고려하여 교사, 행정관계자 및 관리자 등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 집단으로 지정했다. 대중매체 관계자와의 효율적 협력관계 결여가 인권교육이 장려해야 할 사회변화를 제한한다는 점 또한 유네스코의 판단이다. 대중매체 전문가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모든 이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49. 주제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분쟁 이후 상황에서의 인권교육의 역할 특히, 호국영령이나 전쟁으로 인해 죽은 이들에 대한 추모, 종교 간의 상생을 위한 협상 등과 같은 사항에 중점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모든 쟁점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연구와 고등교육의 역할 또한 강조되었는데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학 내의 학위과정 프로그램의 개발,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인권교육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효과성 측정방법의 개발 및 인권교육 연구 및 역량구축에 연관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 또한 이와 관련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50. 기본권을 위한 유럽연합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국제해사기구(IMO),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의 간략하게 해당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

V. 비정부기구 제출 의견서

51.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영국본부는 첫째, 제1차 프로그램기간동안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초중등교육 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유지 및 제1차 기간의 종합적 평가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둘째, 비공식적이고 참여적 교육방법론을 통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도 인권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취약집단

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의무이행자의 책임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인권 준거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수단 등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비정규 교육까지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의 준거틀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야말로 자신들이 포함된 지역 및 세계 안에서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요지에 근거하여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또한 비정규 및 정규교육 부문 양쪽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교육자의 훈련 및 능력 배양에 집중하여 권리 존중방법으로 인권교육 기술과 자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특정 인권쟁점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빈곤퇴치를 제2차프로그램의 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52. 국제사면위원회 몽골 지부는 인권교육을 중고등교육과정에 효율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서술하면서 제2차와 제1차 프로그램 기간의 연속으로 각 정부의 보고서와 정부의 실현 의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 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인권의식 증진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빈곤, 환경 악화, 부패 등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을 전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숙지해야 한다. 집중분야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UN Millenium Goals)에 부합되고 이를 강화하는 분야이어야 한다.

53.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라쿠(Buraku) 해방리그는 제1차 프로그램의 성과 및 취약사항을 지적하면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체계의 강화를 위한 방안모색을 제안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및 각종 조약기구 등의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일부로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과정(tertiary education)에서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대학원과정에서의 인권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등은 그 예시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교육은 민간기업 및 공무원 등 인권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예로는 교사, 경찰, 검찰, 판사, 구금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의료분야 등에 종사하는 이들도 포함한다. 인권교육은 취약집단에 속한 이들의 역량강화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4. 스위스에 근거하는 유럽과 제3세계센터(Europe-Third World Centre)는 남반구의 단체와 사회운동에 대한 사회권 및 개발에 대한 권리, 그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제3세계 센터는 권리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진정절차,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과 자율 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단(working group) 및 기타 유엔의 인권보호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주요 목표로는 남반구의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55. 카메룬 연구환경품질공동사업프로그램(Cercle d'initiative commune pour la recherche, l'environnement et la qualité)은 제1차 기간의 목표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유치원 이후의 모든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2차 프로그램기간동안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아프리카 대륙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촉진제로서 인권문화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56. 카메룬의 '권리와 인간의 의무에 관한 연구학회(Cercle de recherché sur les droits et les devoirs de la personne humaine)는 협력단체와의 폭넓은 협의에 근거하여 제2차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과 대학 뿐 만 아니라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을 대상 집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반 인권교육 프로그램(module)은 의무, 권리, 자유 등과 같은 핵심개념을 다루어야 한다. 제2차 기간으로 2010년에서 2015년 까지를 제안했다.
57. 스리랑카의 빈곤한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이사회(Council of Human Rights of Deprived Communities)는 스리랑카의 외곽지역, 빈곤지역 및 버려진 지역사회를 대상 집단으로 제시하면서 제2차 프로그램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주제영역으로 영양공급 및 종교의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58. 이집트의 지역사회 참여증진 협회(Egyptian Association for Community Participation)는 제1차 기간의 목적이 아직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정부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통합에 대한 약속의 실현방안과 더불어 그 기간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

고 답변하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는 대중매체 관계자(특히, 텔레비전)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대중매체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59. 미국의 인권교육협회(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는 제2차 시기에서도 제1차 시기의 원래 목표였던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1차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권 교육과 권리 중심적 접근(Rights-based approach)의 학교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와 관련지어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확립하고 구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60. 위의 인권교육협회(HREA)는 제2차 기간에는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교사 및 기타 전문인 양성기관에 중점을 두어 제1차 기간의 중점 목표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했다. 제2차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집단은 교사 및 법집행당국,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기타 직업종사자를 포함할 것이며 인권교육은 비정규적 및 정규적 체계를 포괄하는 접근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61. 제2차 기간에는 교육활동은 가장 취약한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예를 들어, 빈곤, 차별, 표현의 자유 결핍 등 교육 및 훈련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삶과 관련된 인권 쟁점을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습당사자의 당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권리보유자와 의무이행자의 구별

및 능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2차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공헌을 인식하고 그들이 정부의 계획을 지원할 때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인권교육협회(HREA)가 제안한 제2차 이행기간은 3년이다.

62. 스위스의 국제사회복지대학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는 사회사업,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의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과 같은 서비스 및 보건 전문직 (helping and health professions)을 잠재적 s대상 집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정신장애인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Care: 소위 MI 원칙이라고도 함), 수감자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건인력 특히, 의사의 역할과 관련된 의료윤리의 원칙(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 전문직 교과과정의 일부로 인권교육훈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제사회복지대학원협회가 제안한 주제영역으로는 절대 빈곤의 철폐, 평화의 권리 및 세계시민권 등이다.
63. 일본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인종을 반대하는 국제운동 - 일본위원회(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Japan Committee)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로

하여금 제1차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중점 의제로 범집행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시했다.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기간에는 소수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중점적인 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64. 이탈리아의 *Ius Primi Viri*는 제1차 목표 대상에 대한 모든 정부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교사와 같은 인권교육자, 경찰, 공무원, 군인, 변호사, 치안 판사, 의사, 간호사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전문가 집단은 부부, 가족, 민족 집단 및 국가 등과 같은 개인 및 대인관계상의 갈등을 분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기간으로는 3년을 제시했다.
65. 태국의 인구 및 지역사회 개발협회(Popul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에 따르면 제2차 세계프로그램은 자국의 HIV/AIDS 퇴치 교육 프로그램처럼 교육과 오락 간의 접목을 통해 인권교육에 보다 친숙한 접근을 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각 연령에 맞는 만화 또는 게임을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만화를 통한 대중매체 캠페인도 가능하며 회사와 같은 이익집단을 대상으로 윤리적 사업관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권고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은 5년 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66. 일본의 *Soka Gakkai International*는 제2차 프로그램 실행기간 동안 고등교육, 학술기관 및 인권관련 기타 연구기관에서의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특정 목표 분야 또는 주제 영역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1차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교사 세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및 학술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을 통해 미래의 교사들은 인권 존중 문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사고를 습득할 수 있다. 고등교육 기관은 교사 및 기타 전문가의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술 및 연구단체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학회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 기간을 3년으로 제안했고 제2차 프로그램 개시 및 행동계획의 초안 작성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여 4년을 제안했다.

67. 인도의 사회평등연대인권센터(Solidarity for Social Equality Human Rights Centre)는 종교관련 폭력 철폐를 위하여 종교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추가로 생명공학 또는 핵에너지와 관련된 과학계 종사자 집단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는데 이는 생명 및 건전한 환경에의 권리에 대한 과학자의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68. 미국의 세계여성연맹(Worldwide Organization for Women)은 모든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게 언급하고 모든 교육자 대상의 인권교육에의 투자는 이상적이라고 포명했다. 아동 자신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증진 프로그램 및 특히, 여아 대상의 인권교육에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9. 요르단, 케냐, 터키 등의 개별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분야와 주제영역을 강조했다 :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 제공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 교사와 리더십 훈련 기관, 난민과 취약집단 아동 대상의 인권교육 등.

VI. 결론

70. 자문기간동안 접수된 당사국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제안과 접근방법은 다음 단락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일반적 결론과 광범위한 경향 및 유형만을 제시할 뿐임을 표명한다.
71. 정부 2곳과 국가인권기구 6곳을 포함한 16건의 답변서에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강조한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일부는 제1차 프로그램 이행 기간을 5년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의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인권교육 이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이행전략이 부족했다고 표명했다. 각국이 인권교육을 초중등 교육체계로 충분히 통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시각이다.
72.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하나의 정부를 포함한 7건의 답변이 제1차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73. 19건의 답변이 입법 혹은 공공정책 입안자, 정부와 군관계자, 국회 의원, 판사, 법집행인, 군인 등과 같은 공무원 및 보건 분야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가운영체계를 육성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74. 교사, 교육자, 훈련자, 교육기관 지도자 및 종사자 또한 인권교육 훈련 대상집단에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이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노력에 선행조건이 된다고 밝혀졌다. 총 22건의 답변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다수의 참여자 또한 부적절한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1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행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개발자 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또한 언급되었다.
75. 의견서 중 15건에 따르면 대학 또는 제3과정의 고등교육을 제2차 운영기간의 목표영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초중등교육에 대한 강조를 고려했을 때 논리적인 맥락에 적합한 발전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학부 및 대학원 등의 인권 혹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권고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응답에 참여한 기관이나 개인은 혁신적인 방법론 및 인권교육 수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가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에 집중을 제안한 답변자는 단 한 명이었던 반면 대다수의 참여자가 일반교육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6. 이들 답변서 중 5건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서의 인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는데 이는 인권교육 대상 집단이 전문가 혹은 취약집단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교육과정상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의 답변지에서 성인이 대상인 인권교육에 있어 평생학습 접근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77. 세계적으로 사회변화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송매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10건의 응답에 의하면 인권교육 활동에 방송매체 및 민간부문, 기업인, 사회복지사 등도 목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78. 다수의 응답자는 일반시민을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권교육에 있어 비정부조직 및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바지하고 있음 강조하고 있다.
79. 취약집단에 속해 있는 이들,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 등을 포함한 아동, 여성, 소수집단 및 선주민, 빈곤하고 배제된 지역사회, 외곽 지역, 노인 등 자신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인권교육이 필요한 특정집단에 속한 권리보유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80.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잠재적 주제영역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수의 답변에서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 인권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체적인 주제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81. 일반적으로 다수의 답변서에서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

적 권리가 제시되고 있는 반면 기타 의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권리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9건이 빈곤퇴치와 인권교육을 통한 빈곤계층의 이들의 인권보장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발에의 권리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Rights Based Approach)을 강조한 답변도 다수 있었다. 고용에의 권리와 노동에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답변도 있었고 보건의료 및 생식에 대한 권리에 언급되었다. 많은 답변자는 교육에의 권리는 인권교육과 권리에 기반을 둔 교육과 연결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언급된 기타 구체적인 권리영역에는 식량, 주거, 물 등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중요성과 인권규범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이는 이들 두 영역이 상호 조화롭게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사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적당하고 구체적인 권리구제 또한 언급되었는데 그 예로는 정보,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및 집회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의견 중에는 고문예방과 관련하여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도 있었다.

82. 차별과 불평등 근절에 대응함에 있어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답변은 10건이었는데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1건 있었다.
83.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기간 관련 사항은 2년에서 10년까지 다양했는데 다수는 5년 혹은 3년의 기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진행속도가 지연되

고 차질이 있을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을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5 제15차 인권이사회에서 보고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초안(A/HRC/15/28)

United Nations

A/HRC/15/28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27 July 2010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Fifteenth session

Agenda items 2 and 3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the Secretary-Gener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Note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s the honour to transmit to the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cusing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eachers and educators,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Council resolution 12/4

* Late submission.

Summary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2/4, in the first quarter of 2010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prepared a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on the basis of, inter alia, relevant United Nations instruments and documents, the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2005-2009) of the World Programme, and OHCHR published material.

In April, the draft plan was submitted for review to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UNESCO, and non-governmental actors including experts and practitioners from all accredite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cademic institution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HCHR received 22 replies with comments, which have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further elaboration of the draft.

In May 2010, OHCHR addressed a note verbale to all governments, inviting them to comment on the draft. OHCHR reviewed and finalized the draft in light of the replies received as at 28 June from Canada, Italy, Japan, Spain and Switzerland.

Contents

I. Introduction	104
A. Context and defini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104
B. Objectives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07
C. Principl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108
II.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for human right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110
A. Scope	110
B. Specific objectives	111
C. Action promo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112
D. Action promoting human right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129
E. Proces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142
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147
G. Coordination and evaluation	149

I. Introduction

A. Context and defini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ncreasingly expressed consensus on the fundamental contribu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aims at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our common responsibility to make human rights a reality in every community and in society at large. In this sense, it contributes to the long-term prevention of human rights abuses and violent conflicts, the promotion of equ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enhancement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in a democratic system.¹
2. Provisions on human rights education have been incorporated into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ocume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art. 26);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art. 7);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art. 13);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art. 10);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art. 10);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art. 29);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art. 33);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art. 4 and 8); the Vienna Declaration

¹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4/71 (21 April 2004), preambular paragraph 4.

and Programme of Action (Part I, paras. 33-34 and Part II, paras. 78-82); the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01 (Declaration, paras. 95-97 and Programme of Action, paras. 129-139); the Outcome Document of the Durban Review Conference, 2009 (paras. 22 and 107);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a. 131).

3. In accordance with these instruments, which provide elements of a defini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agreed up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uman rights education can be defined as any learning,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efforts aimed at building a universal culture of human rights, including:
 - (a)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b)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he sense of its dignity;
 - (c) The promotion of understanding, tolerance, gender equality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indigenous peoples and minorities;
 - (d) The enabling of all person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governed by the rule of law;
 - (e) The building and maintenance of peace;
 - (f) The promotion of people-centr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4. Human rights education encompasses:
 - (a) Knowledge and skills — learning about human rights and mechanisms, as well as acquiring skills to apply them in a practical way in daily life;

- (b) Values, attitudes and behaviour — developing values and reinforcing attitudes and behaviour which uphold human rights;
 - (c) Action — taking action to defend and promote human rights.
5. With a view to encouraging human rights education initiatives, Member States have adopted various specific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action, such as the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on Human Rights (1988-ongoing),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human rights information materials,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and its plan of action, encouraging the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ateg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2001-2010),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the International Year for Human Rights Learning (2008-2009)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2010).²
6. The Platform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n informal cross-regional grouping of Stat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hich supports related international activities,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 first draft, prepar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was presented to the Council in March 2010. In its resolution 13/15 of 25 March 2010, the Council decided to establish a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with the mandate of

²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2/90.

negotiating, finalizing and submitting to the Council the draft declaration by March 2011.

7. On 10 December 2004,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ed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scheduled to begin on 1 January 2005, in order to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in all sectors.³ The World Programme is structured in consecutive phases, in order to further focus 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efforts on specific sectors/issues.

B. Objectives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8. The objectives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e:
- (a)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of human rights;
 - (b) To promote a common understanding, based on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basic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 (c) To ensure a focus on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d) To provide a common collective framework for action by all relevant actors;
 - (e) To enhanc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t all levels;
 - (f) To survey, evaluate and support existing human rights education

³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9/113 A.

programmes, to highlight successful practices, and to provide an incentive to continue and/or expand them and to develop new ones.

C. Principl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9. Educ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World Programme shall:

- (a) Promote the interdependence, interrelatedness, indivisibility an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ncluding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 (b) Foster respect for and appreciation of differences, and opposition t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sexual orientation and other bases;
- (c) Encourage analysis of chronic and emerging human rights problems (including poverty, violent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also in view of rapidly changing developments in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technological and ecological fields, which would lead to responses and solutions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standards;
- (d) Empower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o identify their human rights needs and to claim them effectively;
- (e) Develop the capacity of duty-bearers (in particular, governmental officials), who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those under their jurisdiction, to meet such obligation;
- (f) Build on the human rights principles embedded within the different cultural contexts and take into account historical and social developments in each country;

- (g) Foster knowledge of and skills to us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 (h) Make use of participatory pedagogies that include knowledge, critical analysis and skills for action furthering human rights;
- (i) Foster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free from want and fear that encourage participation,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 (j) Be relevant to the daily life of the learners, engaging them in a dialogue about ways and means of transforming human rights from the expression of abstract norms to the reality of their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conditions.

II.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for human right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A. Scope

10. The first phase (2005-2009) of the World Programme was dedicated to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 A related plan of action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July 2005.⁴

11. According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2/4,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2010-2014) will focus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on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mes for teachers and educators,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at all levels” and “Member States should also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

⁴ General Assembly document A/59/525/Rev.1, Revis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available at: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education/training/planaction.htm> .

12. The plan of action focuses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two broadly-defined sectors, i.e.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13. With regard to training for teachers,⁵ strategies to address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already covered in the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⁶ sometimes also defined as teachers, are dealt with in the higher education section of this plan of action.
14. “Educators” is a broad definition used to refer to people who design, develop, implement and evaluate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mes in formal, in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settings. Whilst the plan of action does not have a specific section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such a wide range of educators, principles and strategies related to the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would also be applicable by analogy.

B. Specific objectives

15. In view of the overall objectives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see section I.B above), the present plan of action aims

⁵ “The word ‘teachers’ covers all those persons in schoo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of pupils”,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1966), section I, definitions, para. 1 (a).

⁶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means all those persons in institutions or programmes of higher education who are engaged to teach and/or to undertake scholarship and/or to undertake research and/or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to students or to the community at large”,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1997, section I, definitions, para. 1 (f).

to achieve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 (a) To promote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in training programmes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 (b) To support the development,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sustainable national strategies;
- (c) To provide guidelines on key compon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in training programmes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 (d)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support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Member States by internation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organizations;
- (e) To support networking and cooperation among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C. Action promo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16. “Higher education” is defined as “all types of studies, training or training for research at the post-secondary level, provided by universities or other educational establishments that are approved a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y the competent State authorities”.⁷ Included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can be institutions for the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teachers at all levels, social workers as well as medical and legal

⁷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1993), section I, para. 1 (a).

professionals.

17. Section C draws heavily from the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as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formal education system has common principles and strategies whether it concerns primary, secondary or higher education, and all these sector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to education.

1. Background

18. In relation to higher education, this plan of action draws on the principles and frameworks set by sever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ducation instruments and docume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related guideline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related guideline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general comment No. 13 (1999)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the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UNESCO 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related regional conventions; the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the UNESCO World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Vision and Action, and the final document of the 2009 UNESCO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The New Dynamic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Societal Change and Development”.

19.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 Meeting Our Collective Commitments, adopted at the World Education Forum in 2000,⁸ the major international platform for and collective commitment to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and targets of Education For All (EFA), reaffirmed a vision of education support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geared towards learning to live together. In the Dakar Framework, education is considered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and stability” (para. 6), by fostering social cohesion and empowering people to become active participants in social transformation. Goal 6 of the Dakar Framework is to improve all aspects of the quality of education, ensuring their excellence so that recognized and measurable learning outcomes are achieved by all, especially in literacy, numeracy and essential life skills.⁹ It provides the basis for a concept of quality education that goes beyond reading, writing and arithmetic, and which entails

⁸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11/121147e.pdf>.

⁹ According to general comment No. 1 (2001)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aims of education, life skills include “the ability to make well-balanced decisions; to resolve conflicts in a non-violent manner; and to develop a healthy lifestyle, good social relationships and responsibility, critical thinking, creative talents, and other abilities which give children the tools needed to pursue their options in life” (para. 9).

competenc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attitudes promoting solidarity as important outcomes.

20. In 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¹⁰ education is seen as a process providing learners with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enabling them to address important questions such as rural development, health care, community involvement, HIV/AIDS, the environment, traditional and indigenous knowledge, as well as human rights. It is further stated that successful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an approach to education that strengthens “our engagement in support of other values — especially justice and fairness — and the awareness that we share a common destiny with others”.¹¹ Accordingly, the World Programme creates synergies with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coupling efforts to address issues of common concern.¹²

2. Strategies

21. While the enjoyment of academic freedom requires the autonom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igher education, as a public good, must be a matter of responsibility and economic support of all governments.¹³

¹⁰ Report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CONF.199/20).

¹¹ UNESCO,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From Rio to Johannesburg: Lessons learned from a decade of commitment” (2002).

¹² UNESCO Strategy for the Second Half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0/ED/UNP/DESD/PI/1, p. 9).

¹³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1999), para. 40, available at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omments.htm>. See also the final document of the 2009 UNESCO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The New Dynamic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Societ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 their core functions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 to the community), not only have the social responsibility to educate ethical citizens committed to the construction of peace, the defence of human rights and the values of democracy, but also to generate global knowledge to meet current human rights challenges, such as eradication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post-conflict rebuil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understanding.¹⁴

22. Accordingly, the rol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s fundamental. As education concerns “not only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but also the educational processes, the pedagogical methods and the environment within which education takes place”¹⁵,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that includes:

- (a) “Human rights through education”: ensuring that all the components and processes of learning, including curricula, materials, methods and training are conducive to the learning of human rights;
- (b) “Human rights in education”: ensuring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all actors, and the practice of rights, with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23. Although many factors may contribute, the integration of this approach in higher education would include action in at least the following five areas.

Change and Development”, p. 2: “Higher education as a public good is the responsibility of all stakeholders, especially governments.”

¹⁴ See final document of the 2009 UNESCO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preamble and paras. 2-4.

¹⁵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para 8.

(a) Policies and related implementation measures¹⁶

24. The development,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policies, as well as the infusion of human rights in educational policies, needs to be consistent with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ademic freedom, and sharing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each State's educational system.
25. Policy development should be participatory, involving associations of teaching personnel and other stakeholders.
26. Key featur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policymaking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may include:
 - (a) Developing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ensuring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and in particular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 (i)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education laws or adopting specific legisl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 (ii) Ensuring that all legislation is aligned with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inconsistency in legislation;
 - (iii) Ensuring that policies are based on relevant research in human rights education;
 - (iv) Developing policie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university governance and management, including all those affecting the university culture and student life, which are consistent with human

¹⁶ Policies may be defined as clear and coherent statements of commitments. Prepared 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all stakeholders, they include principles, definitions and objectives and serve as a normative reference throughout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nd for all actors.

- rights principles;
- (v) Establishing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 recruitment, appraisal, compensation, discipline and promotion of teaching personnel which respect the human rights principles of equality, non-discrimination, respect, dignity, fairness and transparency;
 - (vi) Adopting policies prohibiting sexual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including on the basis of pregnancy or maternity. Reviewing recruitment, hiring, training and promotion policies to remove gender bias;
 - (vii) Developing policies to ensure that higher education is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¹⁷ ensuring access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¹⁸ and avoiding discrimination;¹⁹
 - (viii) Making human rights training a criterion for state licensing or certification for relevant professions.
- (b) Ensuring coherence, links and synergies with related policies:
- (i) Integra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national sectoral plans for higher education; in national plans for Education for All (EFA); in national policy frameworks as part of the Decad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and in inclusive education policies;
 - (ii)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in national action plans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¹⁷ Art. 1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28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¹⁸ Art. 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¹⁹ For instance, different standards of treatment being applied to non-citizens on grounds of race, colour, descent, and national or ethnic origin—se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04) on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para. 31.

and related intolerance; in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and in other development frameworks.

- (c) Adopting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training policy for teaching personnel including:
 - (i) The training of trainers,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of teaching personnel;
 - (ii) Information on the rights,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teaching personnel in all pre- and in-service teacher-training policies and programmes;
 - (iii) Recognizing, accrediting and support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sectors of civil society carrying out training activities in human rights education;
 - (iv) Considering human rights education as a criterion for the qualification, accreditation and career development of educational staff and the accreditation of training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v) Developing criteria and standards to evaluate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mes and their implementation.
- (d) Fulfill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education:
 - (i) Promoting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the right to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 (ii) Including inform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national reports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monitoring mechanisms, including United Nations treaty bodies (especiall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 (especiall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iii) Cooperating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sectors of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education specialists in preparing the above-mentioned national reports;
- (iv) Publicizing and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mechanisms;
- (v) Developing and adopting relevant policy implementation measures. Effective educational policy development and reform requires not only explicit policy statements but also a consistent implementation strategy, including clearly defined measures, mechanisms,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s. Such an implementation strategy involving all stakeholders can ensure coherence,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of policies.

(b)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and tools

- 27. Introducing or improv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requires adopting a holistic approach to teaching and learning, by integrating programme objectives and content, resources, methodologies, assessment and evaluation; by looking beyond the classroom and the higher-education institution to society; and by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different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and beyond.
- 28. The following aspects are necessary for achieving quality human rights teaching and learning. They are addressed to policymakers at national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levels as well as, in some instances, to teaching personnel:
 - (a) Concerning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mes and courses:

- (i) Develop strategies for infusing human rights as a cross-cutting issue into all higher-education disciplines - not only law, social studies or history but also disciplines in the technical and scientific fields (for instance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as they relate to development, environment, housing; medicine as it relates to child care, public health, women's reproductive rights, HIV/AIDS, disability; biotechnology and architecture as they relate to food, housing and environment, etc.);
- (ii) Consider offering introductory courses on human rights for students of all disciplines;
- (iii) Consider introducing advanced courses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specifically relevant for each course of study;
- (iv) Develop specialized Master and PhD programmes in human rights in a variety of disciplines and subject areas;
- (v) Develop multi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human rights academic programmes.²⁰
- (b) Concerning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 (i) Review and revise textbooks and manuals to conform to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balanced and releva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that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 (ii) Make sure that human rights education materials stem from human rights principles as embedded in the relevant cultural contexts, as well

²⁰ Multidisciplinary programmes would include the study, research and engagement with human rights from different disciplinary perspectives, such as philosophy, sociology, languag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etc. Interdisciplinary programmes would entail the crossing of boundaries between disciplines and the pooling of approaches and methodologies to study, research and engage with human rights with a new integrated perspective.

- as historical and social developments;
- (iii) Encourage the collection, sharing,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materials;
- (iv) Utilize human rights/human rights education materials issued by United Nations entities in the country or region a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s well as research documents.
- (c) Concerning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and methodologies:
 - (i) Adopt a teaching style that is coherent with human rights, i.e. which respects human rights, the dignity and self-esteem of each learner, taking also into account cultural considerations;
 - (ii) Adopt learner-centred methods and approaches that empower students, encourage their interactive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that encourage the exploration of alternative perspectives and critical reflection;
 - (iii) Employ experiential learning methodologies that enable learners to understand and apply human rights concepts to their lives and experiences, including community research and/or service;
 - (iv) In planning human rights teaching, define the human rights skills and competencies to be acquired and give equal importance to cognitive (knowledge and skills) and social/affective (values, attitudes, behaviours) learning outcomes;
 - (v) Establish a quality-assurance system for higher educ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and create specific quality assurance mechanisms for human rights education.
- (d) Concerning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and resources:
 - (i) Establish and develop, with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uman rights training and resource centre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r

enhancement of sustainable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mes and courses and ensure their quality, as well as to provide facilities for human rights studies and research;

- (ii) Facilitate access to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networking, exchange of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iscussion. Develop website resources, develop and facilitate e-learning, online learning programmes, e-forums, web conferencing and distance learning programmes;
- (iii) Encourage scholarships as a means to promote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c) Research

29.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new knowledge and advancing critical reflection in the area of human rights is fundamental. Higher education should inform, by means of research, human rights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 through inter alia the following strategies:

- (a) Encouraging and investing in research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and effective methodologies and tools for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also on the analysis and assessment of existing practices, lesson-learning and evaluation exercises, and widely disseminate research results;
- (b) Encouraging and investing in research on ways of translating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pecific human rights instruments into concrete forms (e.g. government policy and programmes, business practices, community initiatives, socio-cultural norms) as a general research agenda;

- (c) Assessing,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examples of good practices in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higher education and other levels;
- (d) Establishing links, partnerships and networks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researchers of differen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on-governmental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research projects;
- (e) Establishing and developing human rights resource centres and libraries which play a capacity-building role, providing facilities for human rights studies and research and ascertain how these can be better supported;
- (f) Encouraging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as a means to promote human-rights related research;
- (g)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urveys and comparative studies.

(d) The learning environment

30. In the context of higher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are free to pursue, develop and transmit knowledge and ideas, through research, teaching, study, discussion, documentation, production, creation or writing. Academic freedom includes the liberty of individuals to freely express opinions about the institution or system in which they work, to fulfil their functions without discrimination or fear of repression by the State or any other actor, to participate in professional or representative academic bodies, and to enjoy all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pplicable to other individuals in the same jurisdiction.²¹

31.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mplies that they strive to be places where human rights are lived and practised.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educational objectives, practices and the organ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through, inter alia, the following strategies:

- (a) Developing explicit and shared policy statements, such as charters o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tudents and teaching personnel; codes of conduct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ree of violence, sexual abuse, harassment and corporal punishment, including procedure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ealing with violence; non-discrimination policies including admissions, scholarships, advancement, promotion, special programmes, eligibility and opportunities;
- (b) For teaching personnel, ensuring that they not only have an explicit mandate from the leadership concerning human rights education, but also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novative good practices in human rights education;
- (c) Adopting policies that protect and respect the human rights of all who teach i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s well as support staff of these institutions (e.g. librarians, archivists, research assistants, administrators);
- (d) Ensuring that students enjoy freedom of expression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rganizing their own activities and representing, mediating and advocating their interests;
- (e) Strengthening the more general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public awareness-raising about human rights, also through the

²¹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1999), para. 39.

organization of special events such as festivals, conferences, exhibitions as a collaborative effort with youth groups,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 etc.;

- (f)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extra-curricular student projects and service in the community on human rights issues, such as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clinics providing free legal advice or the performance of internships with 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other civil society actors.
- (e)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

32. Teaching personnel have a major responsibility to transmit human rights values, skills, attitudes, motivation and practices, both in the performance of their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and in their function as role-models. To this end, the recognition of and respect for their professional status, as well as the provision of adequate human rights training, are essential.

33. Strategies to address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 include:

- (a) Developing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curricula on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the following elements:
 - (i)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eir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and of protection mechanisms;
 - (ii) Multi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human rights perspectives;
 - (iii) Educational theories underlying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links between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 (iv)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role of teaching personnel;
 - (v) Social skills and leadership styles of teaching personnel that are democratic and coherent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 (vi)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eaching personnel and students, including in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institution;
 - (vii) Information on existing educational materials for human rights education, building the capacity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to review and choose from among them as well as to develop new materials.
- (b) Developing and using appropriate training methodologies:
- (i) Appropriate training methods for the adult learner, in particular learner-centred approaches, and addressing motivation, self-esteem and emotional development leading to awareness-raising on values and behaviour;
 - (ii) Appropriate methods for training in human rights education such as using participatory, interactive, cooperative and experience and practice-based methods, taking also into account cultural considerations; linking theory to practice; testing learned techniques in the work situation, particularly the classroom.
- (c)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appropriate training resources and materials:
- (i) Collection, dissemination and exchange of good practices in training in human rights education;
 - (ii) Stocktaking and dissemination of training methodologies develop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sectors of civil society;

- (iii) Development of materials as part of in-service training activities;
- (iv) Development of online materials and resources.
- (d) Networking and cooperation among different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 (e) Promotion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and exchanges;
- (f) Evaluation of training activities including self-evaluation and perceptions of trainees on the relevance, utility and impact of training activities.

3. Actors

- 34. Main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of the plan of action rests with ministries of education or higher education, working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for instance, finance ministries) as well 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relevant training colleges, with varying levels of responsibility,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institutional autonomy.
- 35. The above-mentioned actors will need to work closely with numerous 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 (a) Unions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
 - (b) Student unions and associations;
 - (c) Legislative bodies, including educatio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education parliamentary committees and advisory groups;
 - (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uch as ombudsmen and human rights commissions;
 - (e) Relevan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hich participate in the

UNITWIN Networks and UNESCO Chairs programme;²²

- (f) National college and university networks;
- (g)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 (h) Education research institutes;
- (i) National and local human rights training and resource centres or institutes, including those with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j) Training colleges, where they exist, for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
- (k)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36. Other stakeholders to be involved would include:

- (a) The media;
- (b) Religious institutions;
- (c) Community leaders and local community institutions;
- (d) Indigenous peoples and minorities;
- (e) The corporate sector.

D. Action promoting human right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37. Section D of the present plan of action focuses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a broad range of adult professionals who have specific responsibility, as state actor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those under their jurisdiction. They include:

²² UNITWIN/UNESCO Chairs projects deal with training and research activities and cover all major fields of knowledge within UNESCO competence such as education, human rights, cultural development, environment, etc. The principal beneficiaries of this programme ar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 (a) Civil servants²³ who, depending on national law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may include officials and policymakers from government ministries and departments, diplomats, employees of loc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s well as fiscal and economic agencies, teachers, public health professionals and social workers;
- (b) Law enforcement officials,²⁴ i.e. police, prison personnel and border patrols, as well as security forces and the military, when they are given police powers;
- (c) The military.

38. The above-mentioned professional groups have very diffe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ultures and specific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pplicable to them. Given its broad scope, this section will only present some general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se professions, while occasionally providing specific examples.

1. Background

²³ There is no internationally-agreed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civil service” (see World Bank article “Civil Service Law & Employment Regimes”, 26 April 2001, available at <http://www1.worldbank.org/publicsector/civilservice/civilservicelaw.htm>).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civil service” and “civil servant” differs wide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See for instanc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Thesaurus, 6th edition, 2008 (available at <http://www.ilo.org/public/libdoc/ILO-Thesaurus/english/index.htm>): “civil service” is referred to as “the permanent, professional branches of state administration, excluding military and judicial branches and elected politicians” and “civil servant” as “public administration employee”. In current usage, the term most commonly refers to officials within civilian central government or subnational government (see the World Bank as cited above). Research shows that they may include officials from government ministries, departments, executive agencies, diplomatic service, local government and city councils or municipalities, fiscal and economic agencies, revenue collection agencies; in some cases, also teachers employed in public education systems and employees of public hospitals (non-exhaustive list).

²⁴ For a definit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ee art. 1 (a) and (b) of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vailable at <http://www2.ohchr.org/english/law/codeofconduct.htm>.

39. With regard to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the plan of action draws 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40. In addition, the United Nations has developed a serie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recommendations, basic principles, codes of conduct etc., which provide more detailed guidance to certain professional group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lin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41. For instance, in the case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ose instruments include:
-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 The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 The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The Principles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
- The Principles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the Tokyo Rules)
- Instrument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detainees and prisoner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Instruments concerning juvenile justic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42. Similarly, specific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would be applicable to the civil service or the military.

2. Strategies

(a) Training policies and other related policies

43. If training is to produce the desired impact on behaviour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t must be clearly supported by and linked to corresponding policies and rules in the trainees' organization or institution. With regard to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the following strategies could be adopted:

- (a) Reviewing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policies to make sure that they include human rights training,²⁵ and make audience-specific human rights courses compulsory for pre-service training;
- (b) Encouraging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training policy relating to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with such training as a mandatory criterion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 and promotion;
- (c) Adopting policies to recruit and especially train officials appropriately suited for dealing with vulnerable groups which may be dealt with by the professions, such as children, women, minor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etc.
- (d) With regar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training:
 - (i) Commitment to human right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should not translate into just one-off training courses for selected officials but should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a sound national training structure, involving both the sector in question and those sectors of society it is supposed to serve;
 - (ii) Reviewing all existing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curricula to explicitly integrat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s in all relevant subjects, and in addition develop specific human rights training courses as appropriate;

²⁵ See, for instance para. 3 of general recommendation No. 13 (1993) on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iii) Encouraging the creation of a fully integrated human rights centre in civil service training colleges, schools of government, and police and military training colleges;
- (iv) When possible, giving priority to the training of trainers, i.e. those who are charged with conducting human rights training and material or knowledge dissemination efforts after returning to their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duty stations. In proceeding this way, the impact of a training programme is multiplied. In the case of training of trainers, training programmes should also include sessions on training methodology (see above) and design (both lessons and materials);
- (v)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incentives for the different professional groups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mes;
- (vi) Setting up a mechanism for evaluation and impact assessment with regard to institutionalized human rights training, in accordance with each State's system.
- (e) As training should not be an isolated effort but rather part of a human rights capacity-building strategy, it is important that policie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profession be also reviewed to make sure that they are not inconsistent with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at they specifically promote the contribution of the profession to human rights. Those policies c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vetting system to exclude from the civil service, law enforcement and the military candidates who do not commit to human rights principles; policies for the recruitment, appraisal, compensation and discipline of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which are in line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of equality, non-discrimination, respect, dignity, fairness and transparency; policies prohibiting sexual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nd regulations for specific professional tasks which may particularly affect human rights (such as, in respect of law enforcement, standing orders which may cover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or the prompt and effective response to cases of violence against women).

(b) Training processes and tools

44. Strategi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training for adult audiences, such as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include:

(a) With regard to training methodology and practices, developing human rights training, based on certain methodological principles,²⁶ as shown by adult learning studies and experience, including:

(i) Audience specificity

Training must be directly targeted and appropriately addressed to the particular audience, be they police, health-care workers, diplomats, military, development professionals etc. A consultative training needs assessment, involving the target institution or group to be trained, should be organized in order to undertake an analysis of the professional duties, experiences, expectations, personal backgrounds and aspirations of training participants, as well as their level of human rights knowledge and skills; to set up specific learning objectives (desired post- training

²⁶ Se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uman Rights Training –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Methodology* (United Nations Publications, no Sales No.).

changes in participant knowledge, attitude, behaviour and skills); to design an evaluation strategy, and in particular how the achievement of the learning objectives will be measured; and to assess other activiti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ii) Relevant and practical content

It follows from the previous principle that the training content should focus on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actices that are directly relevant to the daily lives of trainees. Professional groups need to know not just what human rights are, but also how to apply them in real life situations. Training content should, therefore, be designed around the functions of the professional group and how to apply human rights in the performance of them, also focusing on human rights issues which would more likely be encountered by the specific profession;²⁷

(iii) Participatory and sensitizing training techniques

Training programmes should feature a variety of creative and participatory adult training techniques to secure active involvement by the learners, including brainstorming, role playing, group work, case studies, panel discussions and field trips, possibly with the use of audiovisuals. Well-designed exercises could sensitize trainees to their own potential for both contributing to behaviour that violates human rights (e.g. strengthening trainee awareness of gender²⁸ or racial bias in

²⁷ For instance, States are encouraged to formulate and implement training programmes for law enforcement, immigration and border officials, prosecutors and service providers, with a view to sensitizing them to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see outcome document of the Durban Review Conference, para. 75). Officials who work on migration issues or are in contact with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ill need to get acquainted with the content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²⁸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para. 24 (b)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1992) on violence against

their own attitudes or behaviour) and promoting and defending human rights;

(iv) Peer learning

Much more can be accomplished through a peer-learning approach that features, for example, the police and the military being trained by their peers as opposed to a professor-student training model. This approach ensures trainers' access to the distinctive professional culture that surrounds each audience. Simultaneously, practitioner trainers should be accompanied and supported by human rights experts, thus ensuring that human rights standards are fully and consistently reflected through the training process. Similarly, international training activities and exchanges could be promoted among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same professional group;

(v) The role of self-esteem

Adult trainees will bring to the training their own professional expertise and practical experience that should be both acknowledged and drawn on for the benefit of training. Trainers should thus seek to establish an atmosphere in which the exchange of expertise and experience is facilitated,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trainees is recognized and professional pride which reflects human rights principles is encouraged.

(b) With regard to training content, developing distinct content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reflecting their diffe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institutional/organizational

women,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tated that gender-sensitiv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other public officials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ultures, e.g:

- (i) With regard to civil servants, who may include a broad variety of professionals (see para. 37 (a) above), human rights training content within this category would differ substantially. For instance, human rights training for social workers²⁹ would be oriented to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women, elderly persons, disabled persons, prisoners, refugees, and migrants, as social workers need to guarantee protection when State action for the public good threatens the human rights of those particular persons or groups. Human rights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may focus on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context of good governance,³⁰ i.e. the exercise of authority through political and institutional processes that ar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and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Human rights training for diplomats may focus, inter alia,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mechanisms, as diplomats may be called upon to ensure their countries' input in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achinery;
- (ii) In the case of the police,³¹ human rights training would cover human rights standards touching upon various police functions, such as methods of police investigation; search and seizure; arrest and pretrial detention;

²⁹ See OHCHR,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a Manual for Schools of Social Work and the Social Work Profession*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4.XIV.4).

³⁰ See OHCHR, *Good Governance Practic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7.XIV.10).

³¹ See OHCHR human rights training package for law enforcement, consisting of the following: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6.XIV.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Trainer's Guide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XIV.1); and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actice for the Police: expanded Pocket Book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XIV.7).

use of force and firearms; policing in civil disorder, states of emergency and internal conflicts; legal crowd control measures, etc. It would also focus on groups requiring special protection such as juveniles, women, migrants, refuge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Depending on the audience, it could include the infusion of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to matters of police command, management and control, including the issuing of standing orders, development of codes of conduct, entry and in-service training, fair and non-discriminatory recruitment processes, screening processes for new recruits, community policing strategies, the establishment of complaints mechanisms, and the obligation to launch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 the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 (iii) Human rights training for prison officials³² would familiarize trainee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operation of penitentiaries, facilitate examination of humane and effective techniques for the performance of prison officials and of legal and judicial func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prepare trainees to include this information in their daily work. It could include human rights standards regarding facilities for prisoners and detainees; prison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cluding HIV/AIDS; treatment of special categories of prisoners and detainees, including juveniles, women, persons with

³² See OHCHR training package for prison officials, consisting of the following: *Human Rights and Prisons: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Prison Official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4.XIV.1); *Human Rights and Prison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4.XIV.4); *Human Rights and Prisons: Trainer's Guide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Prison Official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4.XIV.6); and *Human Rights and Prisons - a Pocketboo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Prison Official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4.XIV.5).

- disabilities, remand prisoners; prison records; prison administration, discipline and complaints procedures; use of force; punishment and recourse procedures; due process and complaints;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including family, legal counsel and medical personnel; freedom of belief and worship; prison labour (e.g. work conditions, remuneration); and education and recreation;
- (iv) The military would need to be train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as relevant to their conflict-related tasks, as well as to those duties of modern professional soldiers that go beyond the waging of war. These increasingly include civil policing duties,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public safety under states of emergency, and assignment to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The effective, professional and humane performance of these duties requires knowledge of and sensitization to human rights standards, as well as the skills to apply them in the daily work of the military. Traditional military training has, however, in many cases included only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s (or humanitarian law), including the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heir additional protocols. Human rights training per se, however, has been conspicuously absent.
- (c) With regard to training tools, developing training materials that reflect the above-mentioned methodology. Existing textbooks and manuals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to ensure that they conform to human rights principles and are audience specific.

(c) The learning and working environment

45. Human rights training can only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where human rights are practised. To this end, the following strategies could be implemented:

- (a) Developing and adopting clear and shared policy statements such as codes of conduct and professional ethics for staff and officials, codes of practice for employers explicitly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in all areas of work, and charters 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employees;
- (b) Encouraging the recognition and celebration of human rights achievements through human rights events, competitions, awards, scholarships and prizes;
- (c) Encouraging interaction between law enforcement officials, local government and military and the wider community, including the formal adoption of plans of action (for instance, to combat racism, discrimination, gender violence, etc.).

3. Actors

46. Main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of the plan of action rests with the ministries responsible for the civil service,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for instance, depending on arrangements in specific countries, these may b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interior, ministry of justice or ministry of defence), working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for instance, finance ministries) as well as local government.

47. The above-mentioned actors will need to work closely with numerous 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 (a) Civil service training colleges, schools of government, and police and military training colleges, where they exist;
- (b) Unions of civil servant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 (c) Relevant legislative bodies, including for instance interior, defence and human rights parliamentary committees and advisory groups; (d) Municipalities, in particular those belonging to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and associations, such as the UNESCO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 (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uch as ombudsmen and human rights commissions;
- (f) National and local human rights training and resource centres;
- (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48. Other stakeholders to be involved would include:

- (a) The media;
- (b) Religious institutions;
- (c) Community leaders and local community institutions;
- (d) Indigenous peoples and minorities;
- (e) The corporate sector.

E. Proces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1. Steps for implementation

49.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lan of action, Member States should establish realistic goals and means for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untry's context, priorities and capacity, and based on previous national efforts.
50. Four steps are outlined below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national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human right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Such processes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involvement of all possible relevant national actors (see sections C.3 and D.3 above).

Step 1: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of human right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Actions

Keeping in mind the strategies mentioned in sections C and D above:

- Collect information on and analyse the following, aimed at preparing a national baseline study for each of the areas concerned (higher education; civil servants, possibly by category;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³³
 - Curr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human right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including initiatives already undertaken and their

³³ Given the number of the target areas and the diversity of actors involved in each of them, the baseline study could either be conducted by the governmental coordinating department, or separate studies could be undertaken in each target area by the most relevant actor/s.

shortcomings and obstacles.

- Existing policies and legislation. • Good practices and resources and tools existing at local,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that may influence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n those areas.
- Actors currently involved (governmental institut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civil society actors).
- Complementary efforts (such as university programmes with regard to peace education, global education, intercultural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democratic citizenship and values education; ethics programmes for professionals, etc.).
- Determine which human rights education initiatives exist already and identify effective practices and programmes.
- Identify key features and areas by analysing and determin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and limitations in the above areas.
- Arrive at conclusions on the level of implementation.
- Consider how to build on advantages and lessons learned, and how to use opportunities, considering also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deal with disadvantages and limitations.

Outputs

- Preparation of the national baseline studies and wide dissemination of the results nationally to facilitate work on a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Step 2: Setting priorities and developing a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identifying objectives and priorities and foreseeing implementation activities (at least for the period 2010-2014).

Actions

- Define the basic goals for implementation in each of the target areas.
- Fix objectives using this plan of action as a reference.
- Set prioritie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the national baseline studies,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pressing needs and/or available opportunities.
- Focus on interventions leading to impact, giving priority to measures that will secure sustainable change vis-à-vis ad-hoc activities.
- Encourage the building of alliances and synergies among different actors.
- Identify the following:
 - Inputs - allocation of available resources (human, financial, time)
 - Activities (tasks, responsibilities, time frame and milestones)
 - Mechanisms for coordination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 Outputs - concrete products, such as legislation, codes of conduct, educational materials (new or revised manuals), training programmes, non-discriminatory policies, etc.
 - Outcomes - results to be achieved

Outputs

- A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Step 3: Implementing and monitoring

Actions

- Disseminate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among concerned services and stakeholders and implement the planned activities in cooperation with them.
- Monitor implementation with regard to the identified milestones.

Outputs

- Progress report(s) with regard to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Step 4: Evaluation

Actions

- Adopt self-evaluation and independent evaluation methods to review implementation, and as a means to improve and strengthen activities.
- Acknowledge, disseminate, and note the achievement of results.

Outputs

- National report(s) on the outcomes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 Recommendations for future actions based on lessons learned.

2. Coordination

51. The main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rests with the government, which should identify a relevant department as a focal point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elabora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The coordinating department would engage with relevant units, ministries and other concerned national actors. It would also cooperate with national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elaboration of country reports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treaty bodies,³⁴ special rapporteurs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order to ensure that progress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this plan of action is included in those reports.

52. The coordinating department would liaise with OHCHR by sharing information on progress and by ensuring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government's final national evaluation report at the conclusion of the second phase.

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53.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is to be directed at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n support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It may be provided by:

(a) The United Nations system,³⁵ including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³⁴ See the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guidelines on a common core document and treaty-specific targeted documents” (HRI/GEN/2/Rev.6), para. 43, available at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icm-mc/docs/9th/HRI-GE-2-Rev6.doc>.

³⁵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regularly raise with Member States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For instance, the treaty bodies, when examining reports of States parties, may place emphasis on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to implem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nd may reflect that emphasis in their concluding observations; thematic and country mechanism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cluding the special procedures, as well as working groups) may include in their reports progress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s also raised in the context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addition, a specific UNESCO mechanism addresses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 (b)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s affiliated to the United Nations, such as those involved in social welfare; medical and health services; drugs and trafficking prevention; refugees, migration and border security; and criminal procedure;
- (c) The United Nations-mandated University of Peace (UPEACE);
- (d) Other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e)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f)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professional networks;
- (g) Inter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h) International and reg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i)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resource and documentation centres;
- (j) International and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orld Bank, regional development banks, etc.), as well as bilateral funding agencies;
- (k) Multilateral and bilateral development agencies.

54. It is essential that these actors collaborate closely in order to maximize resources, avoid duplication and ensure cohere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lan of action.

55. The above-mention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may:

- (a) Support governments in the elabora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4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b) Provide support to other national actors involved, in particular national and lo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fessional association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c) Facilitate information-sharing at all levels by identifying,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good practices, for example through the awarding of prizes, as well as on available materials, institutions and programmes;
- (d) Support existing networks amo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ctors and promote the creation of new ones at all levels.

G. Coordination and evaluation

- 56. OHCHR will ensur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ent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particular UNESCO with regard to higher education, and other actors; it will also promote related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 57. At the conclusion of the second phase, in early 2015, each country will undertake an evaluation of actions implemented under this plan of action, taking as reference in particular sections C, D and E. Member States will be called upon to provide their final national evaluation report to OHCHR. OHCHR will prepare a global report based on those national evaluation reports, and will submit i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2015.

부록 6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년도 계획수립에 따른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 (OHCHR)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국문)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년도 계획수립에 따른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초안

1.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2차시기의 중점 목표분야

□ 기타 정규교육과정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원 등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① 필요성

- 초중등교육단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단계에서도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공공서비스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예비인력들(법조인,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사전교육(pre-service education)로서의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하는 인권교육·훈련 모형 개발 및 제시 필요
-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연구하고 인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육성 필요

② 활동과제

- 대학 및 분야별 전문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과정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의 인권교육 내용 포함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양성(Training for trainers)
- 대학평가 항목에 인권교육 요소를 포함하여 인권교육이 자발적

으로 활성화 하도록 함

- 공공분야 취업 등에서 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좌 취득학점 인정제도 도입
- 각 지역별로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을 지정·운영하면서 상호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중점 교육대상(전문가 집단, 권리집단)**

① **인권교육의 대상**



② 중점대상 1 : 사회복지사

○ 필요성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필요
- 사회복지의 실천이 수혜가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의 주체성과 자기 권능감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 가이드 제공 필요

○ 활동과제

- 인권적 관점의 사회복지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사회복지사 양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도입 및 자격 시험에 인권내용 포함
- 권리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을 위하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in-service 단계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취약집단 혹은 당사자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③ 중점대상 2 : 기업인

○ 필요성

- 현대 사회에 있어 기업은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고, 이에 따라 단순 생산 활동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기업에서 고용관련 성별·장애·인종·나이·학력 등의 사유로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함. 특히 기업경영에서 ‘인권가치’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이 기업생존과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점을 인식하도록 함

○ 활동과제

- 공공기업 등 각 기업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차별을 예방하는 인권교육 도입
- 기업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일반 공공분야 : 중앙·지방 행정공무원

○ 필요성

- 인권교육 중점대상으로 검사·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정직·보호직·출입국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 정책을 수립·결정·집행하는 중앙·지방 행정공무원을 대상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앙·지방 행정공무원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은 매우 중요함

○ 활동과제

- 중앙·지방 행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15시간이상의 각 과정(임용, 승진, 재교육 등)에 인권교육 도입(최소 2시간이상 인권강좌)

- 공직선발시험에 인권내용 포함하여 공직자로서 인권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함

2. 2차시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중점 주제영역

□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세계적 현안

① 빈곤계층의 권리보장

○ 필요성

- 빈곤문제는 직접적으로는 빈곤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절박한 생존권 문제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급격한 사회공동체의 해체로 나타남.
- 이는 당사자인 빈곤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큼. 나아가 이들의 빈곤문제가 세습화, 영구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 따라서 빈곤계층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활동과제

- 생존의 기본조건인 의식주는 물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수준의 의료혜택이나, 취업 등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함
- 국가가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함께 빈곤탈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시행

- 대상별 인권교육 내용이나 교육과정 상의 자유권 뿐 아니라 주거권, 식량권 등과 같은 사회권 내용 강화

②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인권보호

○ 필요성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과도한 정보 수집과 축적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차별문제가 큰 인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정보통신의 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인권분야에 대한 더욱 예민하고 세심한 인권감수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구가 필요함

○ 활동과제

-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제도적 방안 마련
- 교육과 소득수준, 나이와 성별, 지역 간 격차에서 비롯되는 정보접근의 불균등 해소

부록 7

Responding to UN the Second Phase Plan of the World Human Rights Education by NHRC Korea

1. Target sector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 To Increase human rights education not only in elementary school systems but also in higher education systems throughout the formal education curriculum such as universities and post-graduate schools for professions

1) Major Concerns

- Establishing human rights education as a prerequisites for higher education systems such a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models at pre-service training levels for lawyers, law enforcers, civil officials, teachers, social workers, and health service providers to actualize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s
- Developing human rights research institutes based in local universities which have provided human rights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and to promote human rights issues within the community

2) Activity agenda

- Promoting activities to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um within higher education such as universities, post-graduate schools, and life-long education levels in order to train each area of professions
- Promoting and incorporating activities to set up human rights centered training programs for equipping teachers to respect human rights : Training for trainers
- Setting up evaluation systems to include human rights factors for university evaluations
- Setting up certification systems of human rights credits for public sector employment during course works in college levels
- Building and strengthening networking by assuring and running human rights research within the university at the local level

2. Major education target (professional community, interest group)

1) Target popul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Target Populations for Human rights education

School Sectors	Public Sectors	Civil Society S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ents Primary levels : preschoolers, primary, middle-, high schoolers Higher education :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 Professional and Job trainee • Teachers : kindergarten teachers, school instructors - University Professors and faculty members - Educational board members, Educational administr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islature ; - National Assembly members, Law making officials - Judicature ; Judicial Apprentice, Judge, Administrative court officers • Administration ; - Prosecutor, Officials, Police, Correctional officials, Immigration officials - Civil Servant(Local and State official) ; - Care facilities official including social worker, facilities personnel - Military personnel ; Commissioned Officials, Noncommissioned Officials, Sold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fessional groups - Journalists, Medical doctors, Lawyer • Socially influential group - Opinion Leaders, Religion Leaders • Social Vulnerable Groups : Female, Disabled people, Sexual Minority, Migrant Workers, North Korea Defectors, Social Exclusion • business people • citizen

2) Priority group 1 : Social workers and other human service providers

○ Major Concerns

- To require human rights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within human service fields as a frontline employee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and children who are institutionalized
- To actualize right-based social work practices focusing more on self-authority and the empowerment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not on beneficiary perspective, by developing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approach

○ Activity agenda

- Developing practice guidelines for human rights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qualification information, and training of social workers in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 More opportunit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other concerned groups

1) Priority group 2: Business man

○ Major concerns

- Emphasis on the profound effect that companies have on individuals, society, and its subject, beyond the simple produc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Requir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disability, race, age, and level of education within business activities
- Being aware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values and respecting workers' rights within business activities and within management

○ Activity agenda

- Provision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within business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order to prohibit discrimination at work.
-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a business management guideline focusing on human rights perspective

2) Priority group 3 : Public service workers at local and state levels

○ Major Concerns

- Activat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learning systems on a wide range of civil services such as prosecution, police, correctional and immigration officials
- Reminding rules and functions of public service officials to improve human rights as a whole by making and enforcing national policies practically

○ **Activity agenda**

- Setting up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s requiring a-certain-amount of human rights lectures; at least more than two hours for state and local levels (pre-service, in-service and promotional affairs)
- Inclusion of human rights issues within entrance examinations concerning human right capacities for public workers

2. Thematic areas for the second phase world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 Required worldwide priorit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1) Ensuring human rights for people in poverty

○ **Major concerns**

- Realizing and recognizing poverty as a social problem influencing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global communities in a whole
- Requiring to make great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rights of poverty at state and societal levels to cut off chaining and structuring poverty to next generations

○ Activity agenda

- Activities to protect and promote social and economic rights such as the right to work, food and housing as fundamental human rights
- Planning and implementing a national action plan at mid- and long-term levels for emerging groups of the poverty corresponding to the national social service systems
- Strengthening human rights educa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areas, such as the right to food, housing, etc.

2)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 to privacy and human rights issues in intelligence

○ Major concerns

- Large increase in the violation of one's right to privacy and accum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echnical progress

and internet services

- Being aware of the hierarchy issues and discrimination concerning accessibility to updating information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 As there occurs to be changes i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strengthe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 Activity agenda

- Provision of Institutional measures taken in order to protect and to prevent th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 Activities to prevent the gulf inequality on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the basis of education and socio-economic levels as well as age and gender.